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31-0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

특허청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9년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준 표준계약서 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법무법인(유한) 다래
연구기간 : 2019. 8. 26. ~ 2019. 12. 25.
주관연구책임자 : 박지환(법무법인(유한) 다래 변호사)
참여 연구원 : 민현아(법무법인(유한) 다래 변호사)
정영선(법무법인(유한) 다래 변호사)
이석영(법무법인(유한) 다래 변호사)
최재혁(법무법인(유한) 다래 기술경영팀 부장)
서지영(법무법인(유한) 다래 기술경영팀 계장)
정용식(법무법인(유한) 다래 기술경영팀 연구원)
서대연(법무법인(유한) 다래 기술경영팀 연구원)

목 차

Ⅰ.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7

Ⅱ. 기술료

1. 기술료의 정의 ····· 10
2. 기술료 종류 ····· 13
3. 경상기술료 ····· 17
4. 기술료의 유형별 장·단점 ····· 24
5. 기술료의 유형 및 계약 주체별 이해관계 ····· 27
6. 정부 납부 경상기술료 ····· 28

Ⅲ. 경상기술료 중심 표준계약서

1. 기술이전계약 일반 ····· 32
1.1 기술이전 계약의 절차 ····· 32
1.2 기술이전 계약의 주요 항목 및 주의 사항 ····· 35
1.3 기술이전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 39

2. 옵션계약 ····· 43
1.1 옵션계약의 의의 ····· 43
2.2 옵션계약의 필요성 ····· 44
2.3 옵션계약 활용 현황 ····· 45
2.4 옵션계약서 ····· 46
가. 기존 옵션계약서1 ····· 50
나. 기존 옵션계약서2 ····· 53
다. 옵션계약서(표준안) ····· 59

3. 경상기술료 표준 계약(안) ····· 74
3.1 기술이전 계약서의 구성 ····· 74
3.2 표준 계약(안) ····· 78
3.3 경상기술료 중심 표준 기술이전계약 양식 ····· 109
3.4 경상기술료 징수 및 관련 서식 ····· 128

[표] 목 차

[표 1]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의 수취 방법별 비중(상세) ····· 3
[표 2] 경상기술료 활용 저조 원인 ····· 5
[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7
[표 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정의 ····· 10
[표 5] 선행 문헌에서의 기술료 정의 ····· 12
[표 6] 기술료의 종류 ····· 13
[표 7] 부처별 정액/경상 기술료의 정의 ····· 14
[표 8] 출연연 기술실시(이전)계약서에서의 기술료 정의 및 유형 ····· 16
[표 9] 경상기술료 산정 기준 및 방식 ····· 17
[표 10] 경상기술료 산정 방식과 장단점 ····· 18
[표 11] 실시권자 유형별 로열티 산정기준 ····· 19
[표 12] 특허권자 유형별 로열티 산정기준 ····· 19
[표 13] 기술유형별 로열티율 산정기준 ····· 20
[표 14] 업종별 로열티 비율 ····· 22
[표 15] 미국 산업별 경상 기술료율 ····· 23
[표 16] 기술료 유형별 장단점 ····· 24
[표 17] 기술료 징수 시기별 장단점 ····· 25
[표 18] 계약 주체별 이해관계 ····· 27
[표 19] 단계별 경상기술료 납부 절차 ····· 28
[표 20] 유형별 연구개발 결과물 기여도 산정식 ····· 30
[표 21] 기술이전 계약 주요 항목 및 주의사항 ····· 35
[표 22] 기술이전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 39
[표 23] 연도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 ····· 45
[표 24] 옵션계약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46
[표 25] 기술이전 계약서의 구성 ····· 74

[그 림] 목 차

[그림 1] 공공 기술의 활용 현황 ····· 2
[그림 2]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의 수취 방법별 비중 ····· 2
[그림 3] 대학·공공연 특허 활성화 방안 ····· 6
[그림 4] 기술료(로열티) 결정 요인 분석 모델 ····· 15
[그림 5] 실시료율 ····· 21
[그림 6] 경상기술료 징수 절차(예시) ····· 128

Ⅰ.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017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 기술 건수)은 37.9%로 전년도(38.00%)와 유사한 수준이고,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9%에 불과하다.

그림 1. 공공 기술의 활용 현황

도입한 기술의 활용 현황	기술이전 계약 건수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매출) 발생	1,909	(10.9%)
활용을 위한 준비 및 진행 단계(시설 투자, 추가 연구개발 등)	5,720	(32.6%)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음	1,415	(8.1%)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함	8,511	(48.4%)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	17,555	(100.0%)

* 현재 계약 기간이나 기술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계약

* 출처: 2018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특히,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수입은 정액기술료(선급금 포함)가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전 기술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매출 정률 방식의 경상기술료는 10% 내외에 불과('17년 기준 7.5%)한 실정이다.

그림 2.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의 수취 방법별 비중

구분		사례수	일시불	경상기술료		지분의 현금화	기타
				선급금	매출정률		
기관 전체	2011년*	222	72.9	-	9.5	0.0	17.6
	2012년	198	55.9	30.7	12.7	0.0	0.7
	2013년	272	61.6	27.1	10.7	0.0	0.5
	2014년	250	57.2	31.5	9.9	0.7	0.7
	2015년	279	45.0	20.2	9.9	24.4	0.5
	2016년	278	57.3	28.6	13.6	0.2	0.3
	2017년	270	65.8	24.2	7.5	0.3	2.1

*2011년의 경우 선급금이 기타에 포함 (출처 : 상동)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18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은 일시불을 통한 기술이전 수입(65.8%), 경상기술료(31.8%), 기타(2.1%), 지분의 현금화(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에 나타난 기관 유형별 기술료 수취방법의 특징을 보면, 대학의 경우 경상기술료로 지급받은 비율(16.6%)에 비해 일시불로 지급받은 비율(82.3%)이 훨씬 높으며, 공공연구소,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유형에 속한 기관들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상기술료로 지급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공공연구소의 경우 41.5%,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37%)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경상기술료로 지급받은 기술료 수입 중 매출정률 방식보다는 선급금 방식으로 지급받은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의 수취 방법별 비중(상세) (단위:%)

구분		사례수	일시불	경상기술료		지분의 현금화	기타
				선급금	매출정률		
기관 전체	2011년*	222	72.9	-	9.5	0.0	17.6
	2012년	198	55.9	30.7	12.7	0.0	0.7
	2013년	272	61.6	27.1	10.7	0.0	0.5
	2014년	250	57.2	31.5	9.9	0.7	0.7
	2015년	279	45.0	20.2	9.9	24.4	0.5
	2016년	278	57.3	28.6	13.6	0.2	0.3
	2017년	270	65.8	24.2	7.5	0.3	2.1
기관 유형 1	공공연구소	53	57.5	34.3	7.2	0.0	1.0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73	22.4	20.2	16.8	0.2	40.4
	대학	144	82.3	9.4	7.2	0.8	0.4
기관 유형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소	23	57.6	33.7	7.6	0.0	1.1
	특정연구기관	9	77.9	17.4	4.7	0.0	0.0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36.1	62.5	1.2	0.0	0.2
	기타 공공연구기관	7	22.6	56.1	21.3	0.0	0.0
	국공립시험연구기관	34	20.4	37.0	42.6	0.0	0.0
	비영리법인	39	23.0	15.5	9.5	0.2	51.8
	국공립대학	28	78.7	13.3	5.9	2.1	0.0
	사립대학	116	84.4	7.0	7.9	0.0	0.7

*2011년의 경우 선급금이 기타에 포함 (출처 : 상동)

미국 AUTM의 자료(2016 U.S. Licensing Activity Survey)를 살펴보면, 미국 대학 기술이전의 경우 전체 기술료 수입의 3분의 2가량이 경상기술료 수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도 우리나라 대학의 경상기술료 수입 비중(16.6%)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기술료 비중이 매우 저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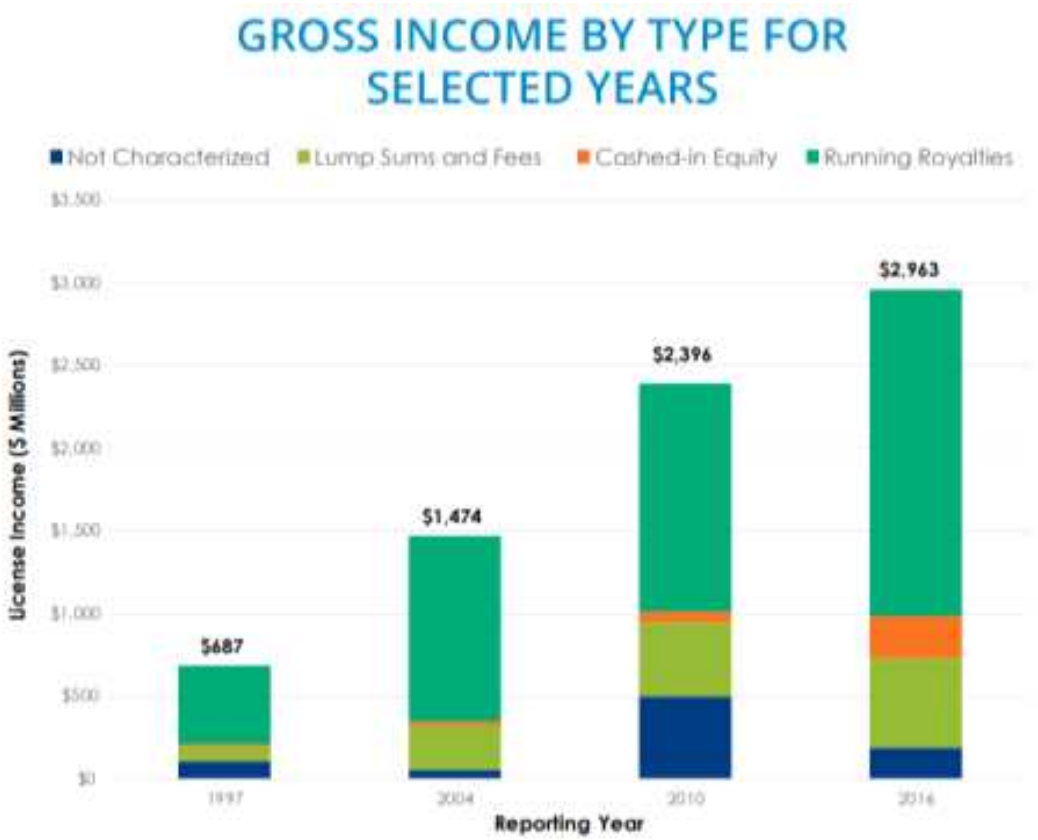

경상기술료 방식의 경우 정액기술료 방식 대비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사업화 실패 시 기술료 부담이 적어 기술사업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상기술료 방식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기술수요자의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영업이익률 대비 경상기술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화 성공시 기술료 부담이 과도할 수 있고, 이전 기술이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하였는지 산정이 어려우며,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활동들의 부담이 작지 아니하고, 경상기술료 산정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시 비밀정보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등 기술료의 과다 및 납부방식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경상기술료 방식을 기피하기도 한다.

기술제공자의 경우 이전 기술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수요자의 매출 발생 여부 및 적정 수준의 기술료를 예측하기 어렵고, 경상기술료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한정된 인력 및 예산으로 인해 기술수요자의 매출조사 등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활동의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경상기술료 방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1]가 높은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화 실패 위험이 높아 실제 수익 발생 확률이 낮으며, 경상기술료 납부에 따른 혜택이나 인센티브 지급이 부족한 점, 기술료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와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관련 실질적 지원 정책/제도가 부족한 점 역시 경상기술료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 경상기술료 활용 저조 원인

구분	경상기술료 활용 저조 원인
기술제공자 (대학 및 공공연 등)	▪ 이전 기술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 ▪ 매출 발생 여부 및 적정 수준의 기술료를 예측하기 어려움 ▪ 매출조사 등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부족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평균 2.9명에 불과
기술수요자 (기업)	▪ 매출정률 방식의 경우, 영업이익률 대비 경상기술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음 *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중위값)은 3.9%에 불과 ('18년) ▪ 이전 기술의 매출 기여도 산정이 정확하지 않음 ▪ 기술 개량 등 매출 발생 시점까지의 기업 기여도 인정이 미흡함 ▪ 매출신고 등 경상기술료 납부 절차 복잡/업무·비용 부담 ▪ 매출자료, 거래처 정보 등 기업 정보 노출 우려 ▪ 계약·법률 및 기술료 관리, 회계 관련 전문 인력 부족
기타 요인	▪ 대학·연구기관 등의 성과를 기술료 수입 총액 기준으로 평가 ▪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가 높은 기술 부족 ▪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관련 실질적 지원 정책/제도 부족 ▪ 경상기술료 납부에 따른 혜택/인센티브 부족

1)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연구개발환경, 연구개발결과물 및 기술수준에 따라 정량화한 측정지표로,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실용화, 양산의 5단계와 9개의 세부 단계로 구성됨

한편, 특허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을 확대·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 경상기술료 관련 계약조건을 구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림 3. 대학·공공연 특허 활성화 방안 (2019, 관계부처합동)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1 시장관점에서 가치있는 발명 선별 · 출원 2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성과지표 전환 3 대학 · 공공연 공급기술의 기술성숙도 제고 4 대리인 비용의 적정화
2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1 대학 · 공공연 발명에 투자하는 IP펀드 조성 2 특허비용 연구자 부담 등 유망특허 사장방지 3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 마련
3 특허기술 이전 · 사업화 법 · 제도 개선	1 전략적 특허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규제 개선 2 경상기술료 중심으로 기술이전 수입 개선 3 특허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특허양도절차 간소화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공급자와 중소기업 등 기술수요자 쌍방의 관점에서 경상기술료 방식의 기술료 지급 조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기술료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계약 주체 및 조항별 손익 분석을 통해 경상기술료 중심 공공 특허 이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표준 계약서 및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과 아울러 공공 특허 기술의 활용도 및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구분	내용
기술료 관련 분석	▪ 기술료의 종류 및 종류별 장·단점 분석 ▪ 기술료 유형에 따른 계약주체별 손익에 대한 이론적 분석 ▪ 대학·공공연 및 기업이 경상기술료 방식을 기피하는 원인 분석 ▪ 정액기술료 실패사례 및 경상기술료 성공사례 분석
계약조항 분석	▪ 사업화 성공 및 경상기술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항 분석 ▪ 특허, 기술사업화,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 특허사업화 성공 관점에서 계약조항 영향 분석 ▪ 계약주체 각자의 손익 관점에서 계약조항 영향 분석
표준계약서 개발	▪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조항마다 주체별 손익분석 해설의 포함 ▪ 각 조항 관련 국내·외 판례 포함(판례가 있는 경우)

Ⅱ. 기술료

1. 기술료의 정의

기술료는 기술을 사용/실시한 대가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라 할 것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이나 선행 연구자료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실시료’, ‘로열티’ 등)나 의미도 차이가 있다.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등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술료’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술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명시적 정의 규정은 없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국가R&D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 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정의

기관	기술료 관련 규정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관리지침	‘기술료’라 함은 실시권자가 기술실시계약에 의하여 기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 등의 대가로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이전요령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술이전하여 획득한 대가로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정액기술료’라 함은 고정기술료라고도 하며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한 기술료를 말한다. ‘경상기술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매출액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한국기계연구원	기술이전 운영규정	‘기술료’라 함은 실시자가 연구원에 납부하는 기술이전 대가를 말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이전업무규정	‘정액기술료’이라 함은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경상기술료’라 함은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련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운영요령	기술료 : 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라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술의 대가를 말하며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경상기술료로 납부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실시관리지침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자로부터 그 실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을 의미한다. 선급기술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의 초기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의미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요령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실시권 획득의 대가로 받은 금원(연구소기업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포함)으로,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 '매출 정률사용료' 등을 말한다. '정액기술료 방식'이라 함은 이전된 기술을 통한 매출에 관계없이 고정금액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상기술료 방식'이라 함은 착수기본료와 매출정률사용료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지급기준	'기술료'라 함은 기술개발 결과를 기술이전 하는 대가로 기술보유자가 그 외의 자에게서 획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국천문연구원	기술실시관리요령	'기술료'라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하는 대가로 연구원이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에 의거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또는 정하는 기한 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경상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라 실시권 허여기간 동안 이전기술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의 총매출액에 해 매년 일정율로 산정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이전업무처리요령	'기술료'라 함은 연구원의 기술을 실시자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술의 대가를 말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료 사용 요령	'기술료'라 함은 기술양도의 대가 또는 실시권의 대가로 연구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기술료'라 함은 기술실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정액 고정의 선불금을 말한다. 6. '경상기술료'는 실시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기술적용제품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사용규정	'기술료'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를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술료'를 "기술 실시의 대가"라고 하는 것과 "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기술의 실시를 전제로 하므로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후자는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이므로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기술료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선행 문헌에서의 기술료 정의

정 의	선행 자료
기술의 지적 재산권 따위에 의하여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	국어사전
어떤 기술에 대한 권리가 계약형식으로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양허될 때,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와 같이 기술에 대한 실시권 또는 기술 자체를 양도받음에 따라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술료라고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 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기술이전 협상에서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 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사업수행결과의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나 전담조직, 사업수행결과의 권리자(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료를 계약형식으로서 특허 등의 각종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권리가 허여 될 때, 그 권리 사용의 대가로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기술료의 경우 정부출연금지원으로 획득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대가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기술, 특허 등 각종 지식자산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지급하기로 합의된 일정 금액 또는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의 합리적인 징수 활용방안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업이 이를 '채무'로 계상하여 실질적인 융자금의 회수 성격을 가지며, 경상기술료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의 성격을 지님	기술료 납부 기업의 활용도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한편, 기술료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2]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넓은 의미에서 출자 방식의 기술이전을 통해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기술료'라 할 수도 있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출자로 설립된 콜마BNH가 2015년 2월 상장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지분의 매각 대금 484억원에 관해 당시 소관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반론적으로 상장 후 수익금은 기술료로 볼 수 없다. 주가는 기술 뿐만 아니라 CEO의 경영성적, 직원들의 노력 등이 더해져 결정된다.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출자하거나 이전해 설립한 연구소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금액은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이유로 이를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료를 기술 이전에 있어서 기술을 이전 받는 자가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허락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2. 기술료 종류

기술료는 산출 방식,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액/고정 기술료(Fixed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있다. 정액 기술료는 계약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와 무관하게 기술에 대한 고정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경상기술료는 계약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 실적(매출액, 순이익 등)에 따라 기술료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표 6. 기술료의 종류

구분	내용
고정기술료	- 고정된 정액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료를 1회 또는 분할로 납부 - 기술 사용에 따른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으로 지급
경상기술료	러닝로열티라고도 하며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가 이루어 질 경우 일정기간 주기로 매출액 또는 판매가, 판매이익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기술료를 계산하여 납부
혼합형 기술료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가 혼합된 형태로, 기술료 일부를 정액으로 선납(선급기술료)하고 나머지는 경상기술료로 납부

*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창출 보호 활용 표준매뉴얼 ('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정액기술료의 경우 해당 기술이 개발되는데 투여된 인력, 자금 등과 기술의 가치를 주요 기준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기술료를 확정하는데 반해, 경상기술료의 경우 장래에 해당 기술이 활용되어 벌어들일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정한 후, 실제 기술료는 매출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는 정액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로 정의하거나, 경상기술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외에 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착수기본료'를 포함하는 정의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표 7. 부처별 정액/경상 기술료의 정의

구분	정의	소관부처
정액 기술료	"정액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금 등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액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액기술료"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정액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경상 기술료	"경상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정률기술료"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경상기술료"란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할 기술료를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착수 기본료	"착수기본료"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착수기본료"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에도 기술료가 지급되는 시기에 따라 선급기술료 또는 선급실시료(initial Payment), 마일스톤 방식(milestone)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도 있다. 선급기술료란 계약 체결 시점 또는 계약 체결 직후에 지급되는 기술료를 통칭하며, 마일스톤 기술료란 기술의 개발 또는 상용화 단계별로 일정 금액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 임상 시험의 진행 단계별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일스톤 기술료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최저기술료는 기술료의 최저액을 정하는 것으로,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반대인 최대기술료는 기술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저기술료와 최대기술료는 일반적으로 경상기술료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기술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술실시로 인한 매출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도 최소 금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저기술료를, 기술수요자/실시자 입장에서는 기술 실시에 따른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도 사전에 합의한 최대 금액 한도에서만 기술료로 납부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하고자 최대기술료 조건을 경상기술료에 부가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림 4. 기술료(로열티) 결정 요인 분석 모델

* 출처: 백종일, 기술이전 협상에서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실제 기술이전 과정에서 기술료는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의 특성 외에도 기술적 요인 및 시장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다, 일방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계약 당사자간 협상에 따라 그 구체적인 유형이나 내용이 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하나의 기술이전계약에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혼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출연연 기술실시(이전)계약서에서의 기술료 정의 및 유형

구분	기술료의 정의	기술료 유형
국가핵융합연구소	기술 실시의 대가	▲선급실시료, ▲경상실시료, ▲최저실시료
세계김치연구소	기술 실시권에 대한 대가	▲선수금, ▲경상실시료
안정성평가연구소	기술 실시에 대한 대가	▲선급실시료, ▲경상실시료, ▲최저실시료
재료연구소	기술 실시권에 대한 대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 실시 허락에 대한 대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 실시의 대가	▲정액기술료(기본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기계연구원	기술 실시권에 대한 대가	▲정액기술료(선급금 포함), ▲경상기술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술 실시권에 대한 대가	▲선급실시료, ▲경상실시료, ▲최저실시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 실시권을 받는 대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마일스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 실시에 대한 대가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식품연구원	기술 실시권에 대한 대가	▲선급실시료, ▲정액기술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 실시에 대한 대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 실시에 대한 대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 실시에 대한 대가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 실시권에 대한 대가	▲착수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한 대가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한국화학연구원	기술 실시에 대한 대가	▲선급실시료, ▲경상실시료, ▲최저실시료

3.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 산정 방식은 크게 '종량'방식과 '요율'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종량'방식은 이전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일정단위(개수, 부피, 크기, 용량 등)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며, '요율'방식은 이전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매출액, 순매출액 또는 이익금액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이전기술의 분야, 형태, 제품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산정 방식을 정하게 된다.

표 9. 경상기술료 산정 기준 및 방식

구분	설명
매출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에서는 완성공사액, 운송업에서는 운임수입 등으로 표현되기도 함 '순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함
순이익	이익 전체에서 영업비, 잡비, 기타 제반 비용을 모두 제외한 순전한 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으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품 생산을 위해 소요된 원가의 집계액으로,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는 포함되고,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계약/실시제품	이전된 기술을 실시한 제품의 판매 단가 또는 생산량에 생산 수량 또는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
산정 방식	1. 계약제품 판매단가에 생산수량을 곱한 금액 2. 계약제품 판매단가에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 3. 이전 기술으로 얻는 가치 또는 가치의 증가(비용의 절감도 포함)를 금액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사용 건수를 곱한 금액 4. 기술사용으로 얻는 가치 또는 가치의 증가(비용의 절감도 포함)를 금액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생산수량을 곱한 금액 5. 기술사용으로 얻는 가치 또는 가치의 증가(비용의 절감도 포함)를 금액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 6. 계약제품의 판매로 얻는 이익의 금액 7. 기타 계약당사자와 협상에 따라 변경된 금액

표 10. 경상기술료 산정 방식과 장단점

산출방식	장점	단점(문제점)
총매출액방식 (총매출액×요율)	• 산출이 간단함 • 검증이 용이함	• 부분품 등 그 자체로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산출이 불가능함 • 기술사용과 무관한 금액도 기술료에 포함
순매출액방식 (순매출액×요율)	• 기술의 사용에 따른 대가지급이라는 개념에 충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 산출과 검증의 어려움, 객관성 부족 •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 • 순매출액 사용 공식의 별도 합의 필요
순이익배분방식 (순이익×요율)	• 기술도입자의 위험배제 (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된 배분)	• 순이익 산출의 어려움 • 기술도입으로 원가 등이 절감되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
절감액배분방식 (절감액×요율)	• 기술도입자의 위험배제 (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된 배분)	• 절감액 산출의 어려움 • 기술도입에 의해 원가 등이 절감되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
단위당 정액방식 (산출단위×금액)	• 산출과 검증이 용이 • 자체 사용 부분품의 기술 도입과 무상양도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가능 • 사후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됨	• 기술의 사용정도와 비례관계에 있는 산출단위의 선정이 어려움 • 산출단위에 곱할 단위당 기술료 금액 결정의 어려움
국산화 금액방식 (국산화금액×요율)	• 기술의 사용(국산화) 요율에 비례하는 기술 대가의 발생 • 산출과 검증이 용이	• 부품이나 원자재 등이 기술 제공자로부터 공급되는 경우만 사용 가능 • 자재 명세서상의 비율과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함

* 출처: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특허청 2017.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3]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통상·전용 실시권이 설정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실시기업 6,365개 기업을 랜덤 추출방식으로 선정한 5,4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703개 기업으로부터 총 1,053건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기술료의 산정 기준으로는 매출액을

3)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특허청 2017.12.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72.4%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며(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82.5%임), 기술유형별로도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72.4%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순이익이나 산출단위를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산정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을 보이는 등 기술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 실시권자 유형별 로열티 산정기준

기업유형	사례 수	매출액 (%)	순이익 (%)	산출단위 (%)	제조원가 (%)	공사계약금 (%)	기타 (%)
전체	794	72.4	6.4	7.8	6.6	4.0	2.8
대기업	5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12	75.0	16.7	0.0	0.0	0.0	8.3
중소기업	777	72.2	6.3	8.0	6.7	4.1	2.7

표 12. 특허권자 유형별 로열티 산정기준

계약상대방 유형	사례 수	매출액 (%)	순이익 (%)	산출단위 (%)	제조원가 (%)	공사계약금 (%)	기타 (%)
전체	794	72.4	6.4	7.8	6.6	4.0	2.8
대기업	36	75.0	8.3	11.1	0.0	0.0	5.6
중견기업	34	82.4	2.9	2.9	2.9	8.8	0.0
중소기업	463	67.1	6.9	9.5	8.2	5.4	2.8
대학·공공(연)	103	82.5	1.9	1.9	6.8	1.0	5.8
개인	150	79.3	8.0	6.0	4.0	2.0	0.7
해외기업	8	62.5	12.5	25.0	0.0	0.0	0.0

표 13. 기술유형별 로열티율 산정 기준

기술유형	사례 수	매출액 (%)	순이익 (%)	산출단위 (%)	제조원가 (%)	공사계약금 (%)	기타 (%)
전체	794	72.4	6.4	7.8	6.6	4.0	2.8
기계	96	76.0	7.3	11.5	2.1	0.0	3.1
건설, 교통	392	69.9	6.4	7.1	6.9	6.9	2.8
의료	14	85.7	7.1	7.1	0.0	0.0	0.0
의약	17	94.1	0.0	0.0	0.0	0.0	5.9
재료, 금속, 자원	57	78.9	5.3	8.8	5.3	1.8	0.0
전기전자	55	72.7	3.6	7.3	9.1	5.5	1.8
정보통신	39	61.5	12.8	17.9	5.1	0.0	2.6
기초과학	6	100.0	0.0	0.0	0.0	0.0	0.0
에너지, 자원, 원자력	11	54.5	18.2	0.0	0.0	0.0	27.3
생명공학, 농림	18	94.1	5.9	0.0	0.0	0.0	0.0
화학, 화학공정	20	85.0	5.0	5.0	5.0	0.0	0.0
환경	49	71.4	6.1	4.1	12.2	2.0	4.1
가정	6	66.7	0.0	33.3	0.0	0.0	0.0
해양, 항공	14	42.9	7.1	7.1	42.9	0.0	0.0

같은 조사에 따르면 경상기술료의 요율은 평균 5.5%로 나타났는데, 구간별로 보면 5~10%가 28.2%로 가장 많다. 실시기업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경상기술료의 평균은 2.4%이며, 중소기업은 5.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약 2배정도 높고, 실시권의 유형별로 보면 전용실시권이 5.2%, 통상실시권은 5.6%로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

그림 5. 실시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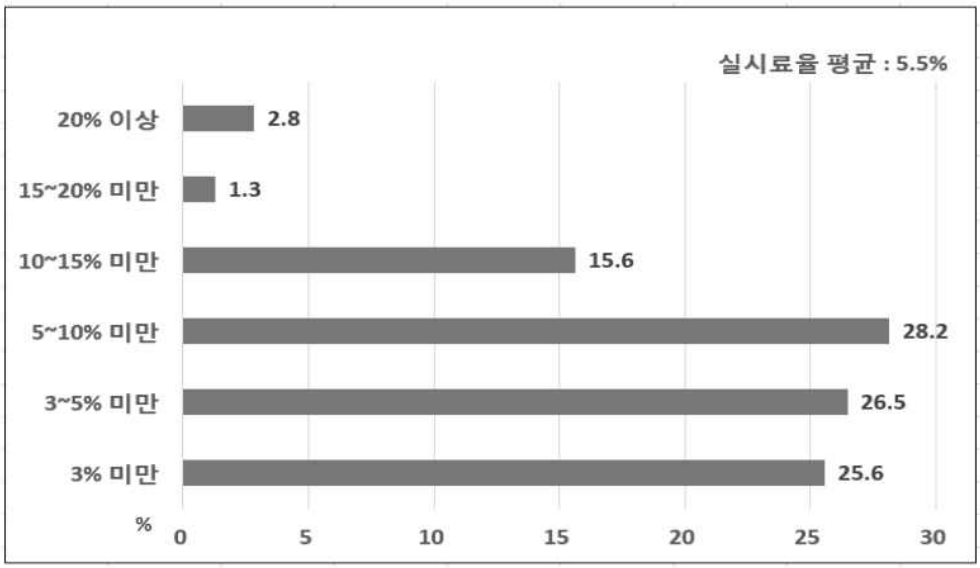

기술 유형(분야)별 경상기술료의 요율은 아래 표와 같은데, 해양·항공 분야가 9.0%로 가장 높고, 전기·전자 분야가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 한국기술거래소의 로열티율 평균이나 2012년 델타텍의 국내 기술거래 사례 분석을 통한 평균 로열티율(3.5%), 해외 업체인 AUS 컨설팅에서 제시한 평균 로열티율(7.04%)과도 차이가 있는데, 로열티율의 특성상 비공개 계약의 일부 내용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데다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샘플의 평균이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요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요율 자체의 평균값은 의미가 더욱 적다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조사에 의하더라도 로열티율만 볼 때 특이 값을 제외하면 대략 3~4% 정도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업종별 로열티 비율

업종	자료	평균	최소	하위 5%	Q1	중앙값	Q3	상위 5%	최대
식료품 제조업	10	3.62	1	1	1.63	2.5	4.5	8.95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3	4.17	1.66	2.24	3	3.84	5	7.45	12.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9	7.44	3	3.45	5	6	10	14.1	1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3.25	2.5	2.5	2.88	3	3.25	4.65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	2.96	2	2	2	2.5	3	5.25	10
1차 금속 제조업/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9	4.02	1	1.68	2.5	3	5	9.1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7	3.72	1	1.15	2.5	3	5	5.84	22.5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3.99	1	1.5	2	4.13	5	7.6	10
전기장비 제조업	48	3.35	1	1.27	2.5	3	3	9.3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9	3.4	1	1.2	2	3	5	7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9	2.95	1.25	1.5	2	3	3	5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3.86	2	2.28	2.88	4	5	5.14	5.3
기타 제품 제조업	13	4.3	1	1.6	2.5	3	5	10	1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9	4.89	2	2	3	5	7	7	7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19	3.27	1	1	1.75	3	5	5	5
출판업	114	12.38	1	1.5	3	5	25	30	37
우편 및 통신업	8	5.81	2.5	3.03	4.75	5	6.25	10	1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7	3.77	1.5	2	2.5	3	4	9.2	15
계	**873**	**5.05**	**1**	**1,5**	**2.5**	**3**	**5**	**15**	**37**

* 출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7)

표 15. 미국 산업별 경상 기술료율

산업분야	기술료율 %(판매금액 대비)				해당 건수
	평균	중앙값	최고	최저	
화학	4.7	4.0	25.0	0.1	81
인터넷	12.3	9.0	50.0	0.3	83
통신(미디어제외)	4.8	4.5	9.5	0.4	83
소비재, 소매, 레저	5.4	5.0	40.0	0.1	117
미디어 연예	9.0	5.3	50.0	1.0	26
식품 가공	3.5	2.9	10.0	0.3	40
의료, 건강제품	5.9	5.0	50.0	0.1	391
의약 생명공학	7.3	5.5	50.0	0.0	534
에너지 환경	5.1	5.0	20.0	0.5	119
기계/도구	5.1	4.5	25.0	0.5	91
자동차	4.6	4.0	20.0	0.5	65
전기, 전자	4.2	4.1	9.0	0.5	130
반도체	4.3	2.8	30.0	0.0	79
컴퓨터, 사무용기기	5.5	4.0	25.0	0.2	75
소프트웨어	11.5	6.8	77.0	0.0	174
전체	6.2	4.8	77.0	0.0	2,088

* 출처: 미국 AUS consultants의 업종별 기술료율(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 라이센스 기술 2,088건 분석한 결과로 평균 기술료율은 6.2%

4. 기술료의 유형별 장·단점

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이므로, 기술료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및 사업화 관점에서 다각도로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16. 기술료 유형별 장단점

구분	정액(고정) 기술료	경상 기술료
장점	• 기술이전/투자비용 예측 용이(기술수요자) • 기술료 징수/지급 관련 업무 부담이 적음	• 초기 자금 부담 경감(기술수요자) • 사업화 리스크 축소 가능(기술수요자)
단점	• 초기 자금 부담이 큼 (기술수요자) • 상용화 실패 시 위험 부담 큼(기술수요자)	• 기술료 징수/지급 관련 업무 부담이 큼 •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술 사업화 수익성 악화(기술수요자)
특기 사항	• 사업화 성공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없음(기술제공자) • 분납 방식의 경우 기술료 미납 건이 다수 발생(기술제공자)	• 정확한 매출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기술제공자) • 소기업 등 회계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실효성 낮음(기술제공자)

정액기술료의 경우 성과를 조기에 확정하고, 기술수요자의 사업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기술료 금액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 사업화 성공 시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은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기술이전·투자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쉽고, 사업화 성공 시 기술료 부담이 적다는 부분은 기술수요자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자금이 기술료로 사용되어 초기 사업화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기술료 지급 이후 기술제공자가 비협조적으로 변해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화 실패위험을 기술수요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기술 수요자 입장에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액기술료의 경우 사업화에 따른 제품 생산량, 매출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료 납부나 징수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은 양측 모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기술료의 경우 사업화 성공 시 수익이 확대된다는 점은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나, 반대로 사업화 성공 시 기대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기술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사업화 실패 시 기술료 부담이 적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제공자는 사업화에 따른 제품 생산량, 매출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실시 현황을 실사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수요자는 실적보고, 실사 협조 등 부수적인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료를 징수 시기별로 나누어 각 계약 당사자의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기술료 징수 시기별 장단점

구분	징수시기	세부구분	장·단점	
			기술 제공자 관점 (대학 및 공공연 등)	기술 수요자 관점 (기업)
정액 기술료	계약 체결시	선급 기술료 또는 착수 기본료	㈜성과 조기 확정 ㈜기업의 사업화 노력 유도 ㈜사업화 성공시 수익 확대 불가	㈜기술이전·투자비용 예측 용이 ㈜사업화 성공 시 기술료 부담 최소화 ㈜사업화 실패위험을 기업이 단독 부담 ㈜사업화 자금 부족 ㈜사업화에 대한 연구기관의 비협조
	계약 체결 이후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 계약)	㈜실패가능성 높은 기술의 이전확률 및 이전수익 제고	㈜사업화 실패 시 기술료 지출 최소화 ㈜연구기관의 사업화 협조 유도

		정기 또는 분납 기술료	(상)지급담보수단이 있을 경우 안정적 수익 확보 (단)기술료 미납건 발생 위험 높음	(상)초기 기술료 부담 감소
경상 기술료	매출 발생시	경상 기술료 (매출, 순이익의 O%, 생산단위당 O원 등)	(상)사업화 성공 시 수익 확대 (단)실시현황 실사 등 관리 노력 부담 (단)정확한 매출내역 확인이 어렵고 상당한 비용 발생	(상)초기 자금부담 경감 (상)사업화 실패 시 기술료 지출 최소화 (상)연구기관의 사업화 협조 유도 (단)실적보고 및 실사협조 등 업무 가중 (단)사업화 성공 시 기술료 부담 증가
		최소 기술료	(상)기업의 조기 사업화·매출확대 노력 유도	(단)사업화 지연·부진 시 위험 증가
		최대 기술료	(단)사업화 대성공 시 수익 확대 불가	(상)사업화 동기 부여 (상)사업화 대성공 시 기술료 최소화
출자 방식	지분 매각시	지분의 현금화 (기술출자)	(상)사업화 성공 시 수익 확대 (상)존속기간 이후의 수익도 회수 가능 (상)실시현황 감시 불필요	(상)사업화 실패 시 기술료 지출 최소화 (단)사업화 성공 시 기대 수익 감소 (단)경영 간섭 우려

5. 기술료의 유형 및 계약 주체별 이해관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당사자인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는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계약 조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특히 공공특허기술의 이전에 있어서 기술공급자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가지는 공공성 또는 비영리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간 이해관계는 더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 18. 계약 주체별 이해관계

구분	기술 공급자(공공)	기술 수요자(기업)
목적	• 기술 활용도 제고 및 기술료 수입의 연구개발 재투자	• 기술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
이전기술	• 특정·개별 기술 선호	•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 기술 선호
이전방식	• 통상실시 선호	• 양도/전용실시 선호
실시지역	• 국내 / 특정 지역 선호	• 국내외 / 넓은 지역 선호
기술료 선호방식	• 연구개발비 기준 일정 이상 • 정액기술료(일시납) • 최저 기술료	• 예상/발생 수익 기준 • 분납/경상기술료 • 최대 기술료
기술보증	• 불가	• 필요 (리스크 축소/분담)
기술지도	• 선택적/ 별도 비용 원칙	• 필수 / 기술이전에 포함
개량기술	• 공동 소유 선호	• 단독 소유 선호
3자실시	• 원칙적으로 불가 / 별개 계약	• 3자 실시 필요
계약기간	• 장기 선호	• 단기 선호

6. 정부 납부 경상기술료[4)]

정부 납부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매출 기반)정률기술료로 구분되며, 착수기본료는 기술실시협약 체결시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을 징수하고, 정률기술료는 연구개발 완료 판정 후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이 실시기업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세무조정계산서' 및 '경상기술료율'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정률 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 비율 × ③ 연구개발결과물기여도 × ④ 경상기술료율 (중소기업은 100분의 5)

실시기업은 연구과제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에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을 제시하고 그에 비례한 기술료 납부를 약정하게 되며, 단계별 세부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9. 단계별 경상기술료 납부 절차

단계	구분	내용
1	과제 신청 단계	• 사업계획서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을 제시하고, 그에 비례한 기술료 납부를 약정 (단위 : 백만원, %) 사업화 성과 / 세부 성과지표 /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 )년 (개발종료 후 1년) / ( )년 (개발종료 후 2년) / ( )년 (개발종료 후 3년) / ( )년 (개발종료 후 4년) /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
2	과제 선정 단계	• 실시기업이 제시한 제품 점유 비율 및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등을 평가
3	협약 체결 단계	• 협약 체결 시 경상기술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
4	기술료 납부 단계	• 전문기관에서 '완료'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착수 기본료를 납부하고 • 완료 판정 후 5년간 매년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매출 산정보고서를 제출 후 납부

4)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상기술료 매뉴얼(매출기반 약정기술료)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1호)상 수입금액은 법인세 신고를 위해 영리 법인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이 서식의 '수익금액 조정계산' 항목의 ⑥을 기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28>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정		⑥조정 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항 목	②과 목		④가 산	⑤차 감		
계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 공사명	⑧ 도급자	⑨ 도급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⑬누적익금산입액 (⑨×⑫)	⑭전기말 누적수입계상액	⑮당기회사수입계상액	⑯조정액 (⑬-⑭-⑮)
			⑩해당사업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⑪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⑫ 진행률 (⑩/⑪)				
계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정과목		⑰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⑱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	⑲조정액 (⑰-⑱)	⑳근거법령
⑰항 목	⑱과 목				
계					

다. 기타 수입금액

㉑구 분	㉒근 거 법 령	㉓수 입 금 액	㉔대 응 원 가	비 고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여도는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 20. 유형별 연구개발 결과물 기여도 산정식

구분	산식
신제품 기술 개발 유형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출연금(실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매출액증가율*)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매출액증가율*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개발종료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Ⅲ. 경상기술료 중심 표준계약서

1. 기술이전계약 일반

1.1 기술이전 계약의 절차

모든 계약은 체결 전에 각 계약 당사자가 사전 준비를 거쳐, 상대방과 계약 내용 및 조건을 협상한 후 그 협상결과를 계약서에 반영하게 되며, 기술이전계약도 다르지 않다.

다만,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기술'의 특성(예를 들어 바이오기술, 기초기술 등 즉시 사업화 또는 매출 확인 등이 곤란한 기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료 납부 시점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공공특허의 공공성에 따른 통상실시권원칙과 같은 활용 제약 등 제반 여건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치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가. 사전준비

계약서 초안의 작성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준비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및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목적이나 대상이 분명해야만 계약 체결시 상대방에게 요구할 정당한 조건이나 그 대가를 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계약조건이나 의무를 배제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체결할 계약을 통하여 진정하게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정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을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상대방 국가의 법규, 제도, 정부정책, 조세, 거래 관습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거래조건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국가의 법규나 제도, 조세 등에 대한 위험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의 보유자(특허권자 포함)와 기술수요자(실시자 포함) 사이의 계약이므로, 계약의 목적인 기술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인지,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사업화)할 능력이 있는 당사자인지, 그리고 해당 계약에 따른 부담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상대방의 계약체결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그 계약을 체결한 적법한 협상권한이나 체결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5)]

나. 계약서 초안의 작성 및 검토

기술이전 계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시하는 당사자가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료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한 불명료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6)]

ⅰ) 단어, 문장의 정확한 의미 파악 및 통일적 사용
ii)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수조항의 누락 주의
iii) 계약 조항의 상호 모순 주의
iv) 계약 조항의 이행가능성, 공평성
v) 조세 부담 등 계약 외적인 환경의 반영
vi) 계약 위반 등 위험에 따른 대응수단(해지, 손해배상)
vii) 계약 종료 또는 분쟁 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viii) 계약 종료 시 존속조항
ix) 계약서 첨부서류 또는 계약서에 언급된 서류나 규정들의 검토 및 확인

---

5) Rhone Poulenc Agro, S.A. v. DeKalb Genetics Corp., 284 F.3d 1323(2002) : 원고 롱프랑아그로(RHONE-POULENC AGRO)社는 제초제 내성을 가진 옥수수 식물 재배에 유용한 특정 옥수수 유전자와 연관된 OTP(optimized transit peptide)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특허 재사용권의 유효성을 문제 삼으며 사용권자 데칼브 제네틱스(DeKALB GENETICS)社와 재사용권자 몬산토(Monsanto)社를 피고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기 계약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원사용권자 데칼브社로부터 재사용권을 취득한 재사용권자 몬산토社의 경우, 특허 재사용권자가 선의취득자라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사용권자가 사기에 의해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허 재사용권이 무효, 즉 유효한 권리 이전이 없다면 선의취득 항변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의 취득자(bona fide purchaser for value) 항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특허재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 INTEL CORPORATION v. VIA TECHNOLOGIES, INC., 319 F.3d 1357(2003) : 인텔사(Intel Corporation, 이하 "원고")는 컴퓨터 업계의 표준(인터페이스 및 시그날 프로토콜과 관련됨)을 정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정한 표준에 따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그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비아사(VIA TECHNOLOGIES, INC.(미국법인) 및 VIA Techonologies, Inc.(대만법인), 이하 "피고") 역시 그에 서명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서 규정이 불명료할 경우, 그와 같이 불명료하게 해석할 만한 계약서 문구를 작성한 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델라웨어 법의 원칙이다('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contra preferendum doctrine). 이 원칙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의 문구를 작성한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협상절차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므로, 모든 조건을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대로 정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 양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자사(自社)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에 관한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목표를 정해서는 안된다.

ⅱ) 계약 협상은 자사의 이익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ⅲ) 협상은 양측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상호 Win-Win의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ⅳ) 상황에 따라서는 본래의 계약 목적을 대신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다른 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열린 협상태도를 갖는다.

ⅴ) 협상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요한 쟁점부터 협상을 진행하거나, 반대로 중요하지 않고 쉽게 협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협상을 진행하는 등 수시로 협상전략을 수립·변경함으로써 협상의 신속을 도모한다.

ⅵ)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그 문제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ⅶ) 협상에 상당한 기간과 횟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이 진행 경과 및 결과를 회의록이나 Term Sheet[7]등을 활용하여 문서로써 관리하고, 추후 협상과정에 의사소통의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협상의 신속을 도모한다.

ⅷ)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거나 불합리한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 및 증거를 통하여 반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7) Term Sheet은 계약 협상 중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하거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계약조건들에 대한 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Term Sheet의 준수의무를 기재함으로써 계약조건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아울러 Term Sheet에 관한 협상(Term sheet negotiation)만을 별도로 진행한 이후, 계약서의 작성은 양측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1.2 기술이전 계약의 주요 항목 및 주의 사항

기술이전계약의 사전준비나 협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 조건이나 환경들에 대한 사전 검토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이전 계약의 주요 항목과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1. 기술이전 계약 주요 항목 및 주의사항

구분	주요 항목	주의 사항
당사자	- 명칭 - 설립준거법 - 주소 - 설립형태(개인, 법인 등)	- 명칭과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요소이므로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소도 등기부에 따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전문	- 당사자 설명 - 계약 목적	- 당사자 특정 및 계약의 해석 시 참조를 위해 당사자 설명과 계약 목적을 간단히 기재하도록 함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하면 모두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정의를 소홀히 하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함
대상기술	- 대상기술의 특정	- 계약의 목적이 되는 대상 기술을 특허등록원부 등 공적 장부에 의하여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장부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는 노하우의 경우에는 기술의 명칭, 특징, 실시효과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연구계약이나 위탁개발계약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개발의 원천이 되는 연구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도 필요함
대가	- 기술료 - 지급시기와 방법 - 세금	- 기술개발의 대가로 연구비 또는 실시권 허락의 대가로 착수기술료를 받을지,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몇 퍼센트를 받을지, 최저, 최고액을 정할지 등을 정해야 함 - 실시료 지급시기도 정해야 함 - 실시료 지급방법과 담보 설정도 정할 수 있음

		- 실시료 검증을 위한 조사 권리를 명시하고 그 비용 부담, 차액 지급 등에 대한 내용도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금,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술지원	- 기술문서, 기술지원 등	- 지식재산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 외에 기술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함 - 기술문서는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지원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기술도입자의 의무	- 기술도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기술제공 범위 외 사용 금지, 재실시권 부여 금지, 법규 준수, 기타 기술도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음
비밀유지	1) 비밀정보 정의 2) 비밀유지의무 3) 예외 4) 기간 5) 계약 해지	- 계약기간 동안 주고 받는 주요 정보나 자료는 비밀정보로 정의하고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비밀유지기간은 기술의 발전 속도 등에 따라 3~10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하게 하고 모든 사본을 폐기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간 및 해지	- 계약기간 - 해지사유 - 해지절차 - 해지 후 처리사항	- 계약기간을 정하고 자동연장 등 연장 여부나 연장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계약불이행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아야 추후 해지 관련하여 다툼을 줄일 수 있음 - 최고 후 해지, 즉시 해지, 자동해지 등 해지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함 - 해지가 될 경우 상대방에게 제공된 기술자료 등의 반환이나 폐기, 사용금지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진술 및 보장	- 기술제공자의 진술 및 보장 - 기술도입자의 진술 및 보장	- 계약체결의 기본이 되는 사항(소유권, 분쟁 존부, 계약체결 권한 등)을 진술과 보장에서 규정함

면책	- 기술에 대한 면책	- 제3자 권리 비침해, 유효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음 - 기술 사용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등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음 - 기술 사용한 제품 구매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음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분쟁해결 등은 계속 효력을 유지해야 함
통지	- 통지 주소 -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 거리, 시간상 제약이 있으므로 통지의 방법, 절차, 횟수 등을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불가항력	1) 의무 정지 2) 장기간 정지에 의한 해지 3) 예방 의무	-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행 의무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 너무 오래 중단되면 안 되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재개될 가능성이 적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계약 적용,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이므로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보다는 제3국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영미법이 많이 선택되나, 대륙법계 국가의 법(독일, 프랑스 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분쟁해결	1) 협상 2) 중재	-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고위경영진끼리 호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소송과 중재를 둘 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 소송은 특정 국가의 절차법에 따라 그 나라 법원에서 그 나라 언어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여 국제공동연구계약에서는 선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중재는 세계 공통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국의 중재원에서 진행하더라도 각 당사

		자가 자신의 국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영어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공정하며, 1심제이므로 비용도 경제적인 편임 - 중재지는 제3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아시아는 싱가폴과 홍콩이 주로 선택됨
일반	1) 제목 2) 양도금지 3) 개정금지 4) 권리불포기 5) 완전합의 6) 일부 무효 7) 부본	- 제목은 계약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주요 용어는 미리 정의를 해야 함 - 계약의 권리의무는 양도 불가능하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만 허용됨 -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의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본 계약으로 모두 대체되도록 하여야 계약 내용이 2중으로 합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계약 중 일부 내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임 - 부본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동일한 계약서라고 의례적으로 기재함
서명	- 서명일 - 성명 - 직책 - 서명	- 서명일이 계약 효력발생일인 경우가 많으나, 서명을 각자 다른 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함 - 서명하는 자는 각 당사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별첨	- 기술자료 내역 - 기술지원 범위	-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무상 범위, 유상 범위,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기술이전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기술이전 협상을 위한 계약서 초안의 작성 단계에서는 물론, 협상에 따른 정식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계약의 주요 항목 별 체크리스트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22. 기술이전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조항	주요 항목	검토사항	확인
당사자	당사자 유형 (개인, 법인 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가, 법인인가?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표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에 표시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전문/목적	배경 및 목적	✓ 계약 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정의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명확하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가?	□
		✓ 불필요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가?	□
기술의 표시	기술의 특정 기술의 표시	✓ 이전 대상인 기술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이전 대상이 아닌 기술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제반' 등의 표현으로 인해 범위가 불분명해질 염려는 없는가?	□
		✓ 대상 기술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 대상 특허의 서지사항(특허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등)이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바와 일치하는가?	□

		✓ 출원 중인 특허의 경우 출원일자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
		✓ 노하우가 별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 해외 특허의 경우 국가명과 관련 서지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양도	양도 방법 양도 기한	✓ 특허 양도의 경우 제공할 서류의 종류 제공 기한, 등록비용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
		✓ 양도 대상 기술의 제공·개시 방법(이메일, 인쇄물, 기술자 파견 등)을 정하고 있는가?	□
		✓ 노하우 등 기술 양도의 경우 이전 기한을 정하고 있는가?	□
실시권의 범위	- 실시권의 범위 설정	✓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등 실시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가?	□
		✓ 실시 지역을 국내로 한정할지, 해외인 경우 특정 국가명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정했는가?	□
		✓ (필요시) 실시할 수 있는 특정 제품이나 연구 범위 등 실시 범위를 한정했는가?	□
대가 (기술료)	- 실시료 - 지급시기와 방법 - 세금	✓ 기술실시의 액수 및 지급 시기,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외환 거래의 경우 지급 통화, 환율,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했는가?	□
	- 실시료의 종류 - 지급시기와 방법 - 세금	✓ 대가/기술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과 회차별 납부 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 분할 납부의 경우 납부 담보 수단(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정하고 있는가?	□
		✓ 경상기술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 등의 보고 의무 및 실사(확인) 절차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가?	□
		✓ 기술료의 반환(불가)에 관해 정하고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정보 정의 - 비밀유지의무 - 예외 - 기간 - 계약 해지	✓ 비밀 정보의 의미 및 범위를 적절히 정의하고 있는가?	□
		✓ 계약 해지/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하게 하고 모든 사본을 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
		✓ 비밀정보의 이용 목적 및 접근 가능한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기간은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가?	□
기간 및 해제	- 계약기간 - 해지사유 - 해지절차 - 해지 후 처리사항	✓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 계약 해지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 계약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보증 면책	- 진술 및 보증	✓ 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소유권, 분쟁 존부, 계약체결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가?	□
	- 기술에 대한 면책	✓ 이전 대상 기술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에 관해 적절히 정하고 있는가?	□
통지	- 통지 주소 -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달주의로 할 것인지, 발신주의로 할 것인지)을 정했는가?	□
		✓ 통지 대상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 통지의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가?	□
		✓ 통지 대상자의 변경 시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가?	□
불가항력	1) 의무 정지 2) 장기간 정지에 의한 해지 3) 예방 의무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하고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가? (국제계약의 경우 필수임)	□
분쟁해결	- 소송절차 - 중재/조정절차	✓ 분쟁 해결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
		✓ 소송의 경우 관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
		✓ 중재나 조정 등에 의할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성명 - 직책 - 서명	✓ 계약 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날인 혹은 서명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한 것인가?	□
		✓ 법인 인감 증명서/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였는가?	□
		✓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별첨	- 별지/별첨 - 법인 인감 증명서	✓ 계약 본문에서 별지 혹은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빠짐없이 첨부 되었는가?	□
		✓ 별지 혹은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2. 옵션계약(Option Agreement)

2.1 옵션계약의 의의

계약에서 옵션(Option)이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약속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8] 금융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Option)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자산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도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특정 자산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옵션계약의 경우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 매수 대금)을 지불하는 대신 매매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옵션매수자는 유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나 불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옵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후에 기술이전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검토에 필요한 정보·자료 등을 제공·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옵션 행사기간 내에 당해 기술의 실시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계약을 말한다.[9]

옵션계약은 기술이전 본계약 체결 전에 해당 기술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장래 사업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기술수요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제공자가 기술수요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며, 옵션 행사기간 동안 기술제공자가 실시허락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상대방에게 약속하게 되며, 계약의 양 당사자는 옵션 행사기간 동안 기술유출금지 등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8) Option is "a promise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limits the promisor's power to revoke an offer." (Restatement (2nd) of Contracts § 25 (1981))

9) 윤선희 조용순, 기술이전계약론, 법무사, 2013. 37면

2.2 옵션계약의 필요성

경상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전된 기술이 실시 및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데, 기술의 사업화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Valley)”,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라 불리는 실패 위험이 높은 구간이 존재한다. “죽음의 계곡”은 사업화 초기 기업이 사업화에 곧바로 성공하지 못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을 말하며, “다윈의 바다”란 신제품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경쟁하며 이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자원의 부족을 극복해야만 겨우 사업화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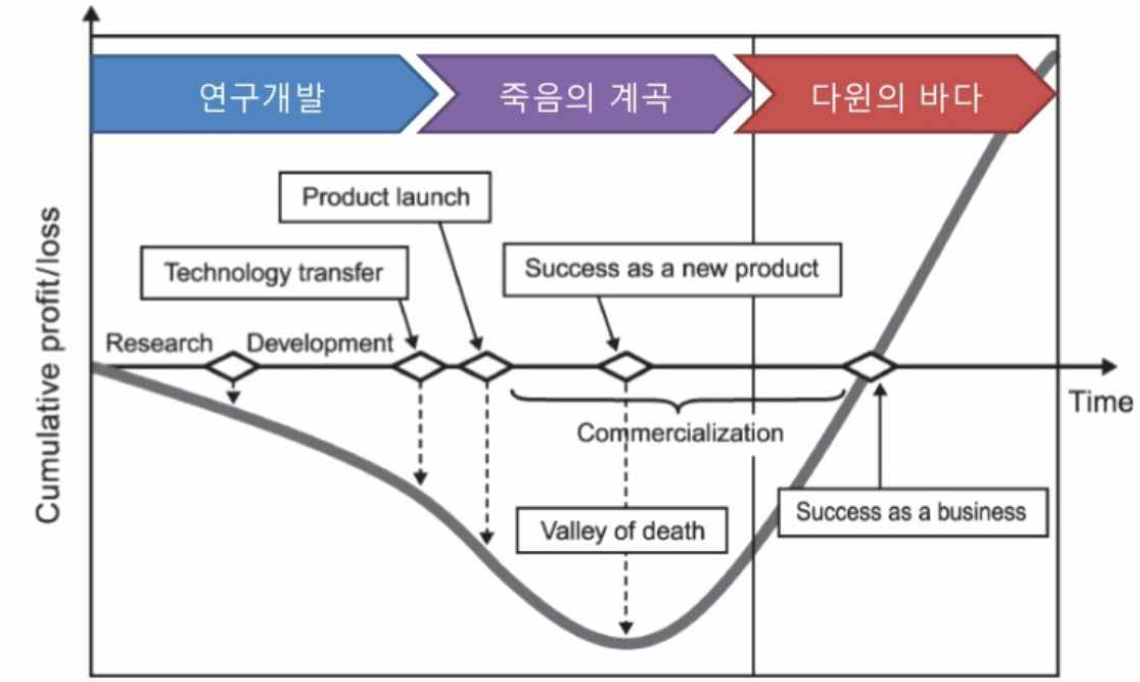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이 기술사업화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단계에서부터의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데, 옵션계약의 체결은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기존의 계약내용만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양 당사자 모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3 옵션계약 활용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연도별 기술이전계약 체결 건수를 조사해보면 옵션계약 체결 건수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5건, 2013년과 2016년에 각 1건씩만이 조사되었다.

표 23. 연도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술양도(매매)	330	383	538	718	1,107	1,587	1,466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	-	-	419	550	511	282
유상기술실시(라이선스)	2,759	3,557	3,457	4,098	5,113	5,385	4,905
무상기술실시(라이선스)	178	282	263	639	322	327	278
옵션계약	5	0	1	0	0	1	0
기타(OEM, 기술제휴 등)	148	90	99	107	207	226	546
합계	3,420	4,312	4,358	5,981	7,299	8,037	7,477

* 출처 : 공공기술이전사업화실태조사보고서

※ 옵션계약(option agreements): 잠재적 기술수요자 또는 양수인에게 기술을 평가하고 라이선스 계약 또는 양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선택권 행사에 관한 계약을 의미함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AUTM의 자료(2017 US Licensing Activity Survey)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년 1천건 이상의 옵션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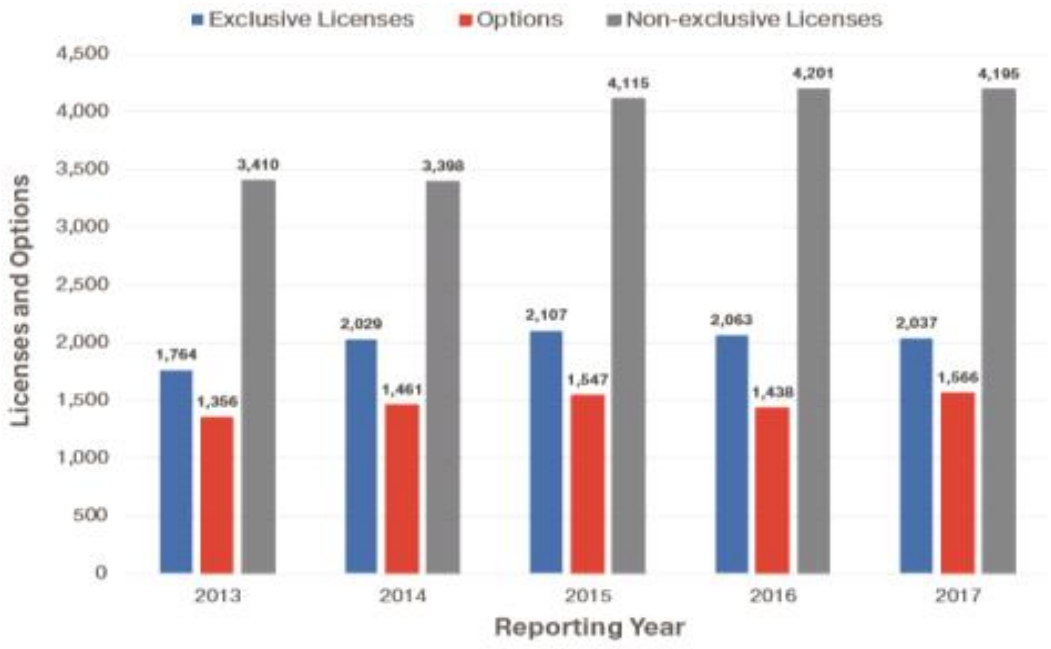

2.4 옵션계약서

옵션계약은 장래 체결될 기술이전계약을 예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기술이전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이전계약이 성립한다.[10)]

표 24. 옵션계약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목		계약내용을 단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함
전문		계약당사자의 표시, 대상기술의 총괄적 표시, 허락권의 선언, 당사자의 의사표명, 당사자의 관계, 계약의 목적, 경위
제1조	정의	용어의 정의
제2조	옵션의 부여	옵션의 명기
제3조	제3자에 대한 옵션의 부여	예약 계약이 독점인지, 비독점적인지
제4조	개시정보	개시되는 정보
제5조	개시방법	개시 시기, 개시 방법
제6조	대가	대가, 대가의 목적, 대가의 범위, 대가의 처리
제7조	옵션의 행사	행사 방법
제8조	비밀유지	비밀유지의 대상, 비밀유지기간
제9조	계약해지	해지 절차, 해지 사유
제10조	통지	통지 방법, 통지 대상
제11조	양도	양도 사유 및 방법
제12조	계약기간	계약 기간 또는 기한
제13조	분쟁의 해결	조정 기관
제14조	협의	규정 없는 사항의 처리 방법 : 신의성실, 상호 협의
후문		
당사자의 표시		

10) 최치호 외, 기술계약실무가이드, 파마코리아나, 2001. 303-304면 일부 수정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미국 대학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옵션 계약서의 경우 특허 비용의 반환이나 특허 출원 관련 규정, 옵션 계약의 연장, 보증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구분	내용
특허비용의 부담	6.2 Reimbursement for Patent Expenses: 특허 비용의 상환 6.2.1 COMPANY shall reimburse ○○○ for all out-of-pocket fees,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 during the OPTION PERIOD in filing, prosecuting, and maintaining the LICENSED PATENTS. COMPANY shall deliver such reimbursement to ○○○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MORY, from time to time, notifies COMPANY of the amount of such fees, costs, and expenses which have been paid or incurred by ○○○ and provide copies of invoices with backup support. '기업'은 옵션 기간 중에 ○○○이 이전 특허의 출원 및 유지에 관해 지출한 제반 비용을, ○○○이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 지불(상환)해야 한다. 6.2.2 COMPANY shall reimburse ○○○ for all out-of-pocket fees,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 as of the EFFECTIVE DATE in filing, prosecuting, and maintaining the LICENSED PATENTS (current estimate $ [amount]). COMPANY shall deliver such reimbursement to ○○○ within thirty (30) days after ○○○ notifies COMPANY of the amount of such fees, costs, and expenses which have been paid or incurred by ○○○ and provide copies of invoices with backup support. '기업'은 계약 효력 발생 시점에 ○○○이 이전 특허와 관련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을, ○○○이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출원	8. PATENT PROSECUTION 특허 출원 8.1 The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the LICENSED PATENT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 ○○○ shall provide COMPANY with copies of all filings and correspondence pertaining to such patent prosecution activities so as to give COMPANY reasonable opportunities to advise ○○○ and cooperate with ○○○ in such prosecution and maintenance. COMPANY shall notify ○○○ in writing of the countries in which COMPANY wishes additional patent applications to be fil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ational phase filings and

	registrations in countries from regional filings. ○○○ shall, at COMPANY's expense, file such additional patent applications. ○○○ may, at its own expense, file patent applications in those countries in which COMPANY elects not to file applications and such application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option granted to COMPANY hereunder. If COMPANY should fail to timely make reimbursement for patent expenses as required in Article 6.2 of this AGREEMENT, ○○○, in addition to their other remedies under the AGREEMENT, shall have no further obligation to prosecute or maintain such LICENSED PATENTS for which COMPANY failed to make timely reimbursement. COMPANY, upon ninety (90) days advance written notice to ○○○, may advise ○○○ that it no longer wishes to pay expenses for filing, prosecuting or maintaining one or more of the applications or patents in the LICENSED PATENTS. ○○○ may, at their option, elect to pay such expenses or permit such LICENSED PATENTS to become abandoned or lapsed. If ○○○ elects to pay such expenses, such patents/patent application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option granted to COMPANY hereunder. 이전 특허의 출원 및 유지는 ○○○의 책임으로 하며, ○○○은 '기업'이 해당 특허의 출원 및 유지에 적절한 조언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출원 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은 추가적인 특허 출원이 필요한 해외 국가가 있을 경우 이를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은 '기업'의 부담으로 해당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의 비용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6.2에 따른 특허 비용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 이전 특허를 출원 또는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기업'은 90일 이전에 서면 통지로써 이전 특허 중 출원이나 유지를 원하지 않는 특허를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은 그 재량으로 해당 특허를 포기하거나 소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해당 비용을 지불할 경우 그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은 '기업'의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옵션계약 연장	At its sole discretion and so long as it is not in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the Company may extend the term for exercise of the Option for another _____ months ("Option Extension")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University ten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e first option period and upon payment to University by Company of an Option Extension Fee in the amount of _____ ($X,000). The Option Extension Fee must accompany the notice and such amount shall be non-refundable and non-creditable against any further license considerations. '기업'은 이 계약에 따른 옵션 기간이 만료하기 10 영업일 이전에 '대학'에 대한 서면 통지 및 옵션 연장 비용으로 ____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옵션 기간을 __ 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옵션 기간 연장 비용은 반환하지 않으며, 옵션 기간 연장은 기술이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손 해 배 상 및 면책	Article 9. DAMAGES AND INDEMNIFICATION 손해배상 및 면책 9.1 No Liability. ○○○ shall not be liable to COMPANY or COMPANY'S Affiliates, or customers of COMPANY or COMPANY'S Affiliates, for compensatory, special, incidental, indirect, consequential or exemplary damages resulting from the manufacture, testing, design, labeling, or use or sale of LICENSED PRODUCT. 무보증. ○○○은 '기업' 또는 그 관계사, '기업'의 고객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실시 제품의 판매, 사용, 표시, 디자인, 시험, 제조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2 Indemnification. COMPANY shall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 including INVENTOR,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loss, liability, expense, or damage (including investigative costs, court costs and attorneys' fees) ○○○ may suffer, pay, or incur as a result of claims, demands or actions against ○○○ arising or alleged to arise by reas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and all personal injury (including death) and property damage caused or contributed to, in whole or in part, by COMPANY'S or COMPANY'S Affiliates, contractors or agents manufacture, testing, design, use, sale, or labeling of any LICENSED PRODUCT or practice of the LICENSED PATENTS and LICENSED TECHNOLOGY. COMPANY'S obligations under this Article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면책. '기업' 또는 '기업'의 관계사 등이 실시제품의 제조, 시험, 디자인, 사용, 판매 또는 표시로 인하거나, 이전 특허 또는 이전 기술의 실시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거나 그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을 경우, 조사 비용,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기타 비용 및 손실 등으로부터 ○○○ 및 그 발명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가. 기존 옵션계약서 1

기술이전을 위한 옵션계약서

○○대학/연구소(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갑이 소유한 ○○기술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를 을에게 이전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옵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에서. "대상 특허"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다음의 특허를 말한다.

구분	특허번호	출원일/등록일	발명의 명칭
1	○○ - ○○○○호	○○○○년 ○○월 ○○일	○○○○○○○○○
2			○○○○○○○○○

② 이 계약에서 "대상 노하우란" 갑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다음의 기술 정보 및 자료 등을 말한다.

구분	노하우의 명칭	노하우의 개요	제공되는 형태/방식
1	○○○○○○○○○	○○○○○○○○○	○○○○○○○○○
2			

③ "옵션 기간"이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년간을 말한다. 단, 이 기간은 을이 제2조에 따라 옵션을 행사한 날 또는 을이 갑에게 이 계약에 근거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한 날에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옵션의 부여) 갑은 옵션 기간 중 을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의 「○○○○에 관한 실시 허락 계약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을이 ○○○○장치를 제조, 판매, 사용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 한다.

제3조 (제3자에 대한 옵션의 부여) 갑은 제3자에 대하여 을에 대한 옵션과 동등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개시정보) 갑은 아래에 기재된 자료를 을에게 개시한다.

1. 특허 출원 제○○○○호 명세서
2. ○○○○제조 방법
3. ○○○○제조에 관한 실험 결과

제5조 (개시방법)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자료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 ① 제2조에 의한 옵션 부여에 대한 대가는 금_____원으로 하며, 을은 제4조에 근거한 기술 자료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② 을은 갑에 지급한 전항의 대가에 관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7조 (옵션의 행사) ① 을은 옵션 기간 중에 제2조에 정한 실시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에 관한 실시 허락 계약서」를 갑과의 사이에 체결한다.

② 을이 옵션 기간 중에 제2조에 정한 실시권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서면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한 경우 또는 옵션 기간 종료 전에 갑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개시된 기술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고 갑으로부터 개시된 기술 자료에 관한 평가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기로 한다.

제8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개시된 기술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만으로 사용하며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은 제6조 제2항의 경우 본 계약 종료 후 ○년간 효력을 갖는다.

②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개시된 기술 자료를 갑의 동의를 얻은 임원 및 종업원에만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다른 제3자에게 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갑으로부터 개시되기 전에 공지된 것
2. 갑으로부터 개시되기 전에 을이 스스로 개발하거나 정당한 제3자로부터 을이 입수한 것
3. 갑으로부터 개시된 후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되는 것
4. 갑으로부터 개시된 후 을이 정당한 제3자로부터 을이 입수한 것

제9조 (계약 해지) ① 을이 본 계약에 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은 ○○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의 파산, 지급불능, 해산, 합병 등의 경우에는 을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 본 계약에 근거한 각 통지는 다음 수신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며, 모든 통지는 발신일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

- 갑 : ○○○
- 을 : ○○○

제11조 (양도)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에 관하여 갑의 사전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제1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종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옵션 기간 종료일 까지 유효하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14조 (협의)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서는 갑·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유효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학/연구소
주　　소 :
대　　표 :　　(인)

“을” ○○주식회사
주　　소 :
대표이사 :　　(인)

나. 기존 옵션계약서 2[11)]

옵션 행사 계약서

○○○○(기술 제공자 ; 이하 '갑'이라 함)과 ○○○○(기술 도입자 ;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갑'은 〈별첨1〉 기재 _____ 관련 기술(이하 '계약 기술'이라 약칭함)을 '을'에게 추후 합의 될 소정의 계약(이하 '기술이전 본 계약'이라고 함) 조건에 따라 이전할 의향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을' 역시 '갑'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 기술의 도입에 관심이 있으며, 기술이전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
3. ○○○(이하 '병'이라 함)는 '갑'과 '을' 간의 기술이전 계약(이하 '기술이전 본 계약'이라 함)을 성사시키고자 한다.
4. 한편 '갑'으로서는 '을'과의 구체적인 기술이전 협상이 중도에서 결렬될 경우 계약 기술이 '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계약 기술의 내용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함으로써 '을'에게 기술 도입 여부의 경영 의사 결정 및 판단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5. 또한 '을' 역시 '갑'과의 구체적인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 기술의 내용이 '을'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아님이 밝혀졌을 경우 그동안 협상에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기술이전 본 계약의 계약 기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갑'의 계약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계약 기술의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이라도 공개받기를 원한다.
6. 따라서 '갑'과 '을'이 당면한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갑과 '을' 사이에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강구하기 위한 옵션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일정한 조건 하에 '갑'에게는 계약 기술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을'에게는 계약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여 기술 도입의 본격 협상 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협상의 과정에서 계약 기술의 실체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여 해당 계약 기술 도입을 거부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제반 내용과 조건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계약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 본 계약상 이전의 대상으로 '갑'과 '을' 간에 논의되고 있는 〈별첨1〉 기재 _____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 〈별첨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기술은 계약 기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기술이 사실상 〈별첨1〉 기재 관련 기술의 범위에 속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 순수 노하우인 기술일 경우 그 자체가 알 수 없는 베일에 싸여 있어 상세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표 제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상세한 내용 및 범위는 향후 체결될 기술이전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도록 함

② '옵션 기술'이라 함은 '을'이 계약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여 기술이전 본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기술 도입 여부의 의사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공개하는 계약 기술 내용 중 극히 일부인 〈별첨2〉 기재의 기술을 의미한다.

* 옵션 기술의 공개와 분석에 의해 베일에 싸인 노하우 기술의 실체를 최소한도일지라도 파악하게 됨

③ '옵션'이라 함은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일정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옵션 계약에서는 기술의 공개 여부, 기술의 이전 및 제공 여부, 본격 협상의 개시 여부, 기술이전 본 계약 체결 여부 등이 포함된다.
④ '옵션의 권리자'라 함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계약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3조 ('갑'의 옵션) ① '갑'은 '을'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옵션 기술 이외의 계약 기술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옵션 권리를 갖는다.
② 옵션 행사 기간 '갑'은 '을'과의 사이에서 기술이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에서 필요시 체결되는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 유지 협정)와 MOU(의향서, 협정서 기타 명칭은 불문하되 여기서는 '갑'과 '을'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도록 합의함) 체결 전까지는 자신에게 부여된 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2항 소정의 옵션 행사 기간 내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해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갑'의 옵션 기술 제공 및 '을'의 옵션) ① '갑'은 '을'에게 본 옵션 계약상의 옵션 기술을 옵션 계약 발효와 동시에 제공하고, '을'은 이 옵션 기술을 바탕으로 계약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여 기술이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본격 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의 선택을 옵션 기술을 제공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기로 한다.

* 상기 6개월 이내에 문서에 의한 통보가 없을 때는 옵션권 행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

② '을'은 '갑'과의 본격적인 협상 이전 또는 협상 과정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협상을 중단 또는 포기하거나 계약 기술의 도입을 거부할 옵션을 갖는다.
③ '을'은 본 조항 소정의 옵션 행사 요건에 따라 옵션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옵션 기술의 대가 및 비밀 유지 의무) ① '갑'이 제공하는 옵션 기술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옵션 대가(금액)를 옵션 기술을 받은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관련되는 원천징수 세금이 있다면 '갑'이 부담한다. 본 항의 옵션 대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며, 만일 기술이전 본 계약의 체결에 성공할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선불금에서 차감 공제하기로 한다.

* 옵션 기술도 계약 기술의 일부이므로 기술 대가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초기의 고정 기술 대가인 선불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② '갑'이 제공하는 옵션 기술에 대해 '을'은 외부 및 제3자는 물론이고 내부 직원일지라도 관계자 이외에는 이 옵션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으며 철저히 비밀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본 항의 비밀 유지 의무는 옵션 계약 종료 후 3년간 더 존속하기로 하고, 만일 기술이전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 계약의 비밀 유지 의무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 옵션 계약 종료 후 몇 년간 더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③ '갑'이 제공하는 옵션 기술에 대해 '을'은 기술이전 본 계약 체결 여부 및 이를 위한 본격 협상 등 본 옵션 계약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④ '을'이 제4조의 옵션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술이전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을'은 즉시 옵션 기술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의 경우 모든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자료도 포함한다.

제6조 (기술이전 본 계약의 주요 조건 예약 및 독점적 협의) ① 본 옵션 계약의 결과로 양 당사자가 기술이전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진다면, 〈별첨3〉 기재의 주요 조건 예약(예비 합의)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하도록 한다.

* 옵션 권리 행사에 편승하여 기술 공급자가 부당하게 기술 대가 등을 인상하여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도를 미리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 기술이전 본 계약의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② 본 옵션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에 대해 상호 독점적으로 협의하기로 약속하고, 기술이전 본 계약의 체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 기간) 본 옵션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옵션 권리의 행사 기한 또는 기술이전 본 계약의 체결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 옵션 계약 제3조 및 4조에서 규정한 옵션 권리 행사 기한은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 해지 등) 본 옵션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갑'과 '을' 중 한 쪽 당사자가 도저히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 파괴 행위를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에 한해 '갑', '을' 중 한 쪽 당사자는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입회 중개인인 '병'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상대방에 대한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한 쪽도 본 계약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한 쪽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 혹은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해야 하며,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_____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분쟁 해결의 또 다른 방법으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합의할 수도 있음. 중재 결정 과정이 비공개인 장점이 있어 비밀을 요하는 기술 관련 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적당함 (예문 : 본 계약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동 중재원의 중재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중재에 의해 처리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① 본 옵션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계약 체결일)부터 유효하다.
② 본 옵션 계약은 본 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던 '갑'과 '을' 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제12조 (해석) 본 옵션 계약에 명기되지 않거나 옵션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3조 (입회 중개인) 본 계약은 ○○○○(이하 '병'이라고 칭함)가 입회·중개했다. 따라서 ○○○○는 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음을 보증하며, 체결 과정에 어떠한 기만·착오·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 입회 중개인은 필요시에 기재하며, 입회 및 중개에 따른 책임 이외에 별도의 보증 책임은 없음을 명시할 필요도 있음
* 입회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 옵션 계약에 법적으로 구속당하지 않음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서로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첨부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000 년 00 월 00 일

갑 _____ (날인)

을_____ (날인)

11) 기술이전업무매뉴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 [참고] 기술료 옵션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조기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착수기본료는 50%를 할인해 주는 대신 할인액 만큼을 추후 사업화 성공 시 매출정률사용료로 상환할 수 있는 '기술료 옵션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료 옵션제는 기술의 사업화 위험에 부담을 느끼거나 초기 사업자금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착수기본료를 50% 할인해 주는 대신, 향후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매출정률사용료의 비율을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게 적용한다. 다만, 계약 시 할인 받은 착수기본료 만큼을 매출정률사용료로 납입한 이후에는 매출정률사용료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환원된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할인받은 착수기본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화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RI 기술료 옵션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해당 기술의 기술성숙도	- 이전되는 기술의 기술성숙도(TRL) 고려시 1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 TRL 7단계(실용화 단계) 이상을 원칙으로 함	30	
매출정률사용료 납부 실현가능성	- 1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할 만큼 예상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구체적인지 - 매출액 산정 및 ETRI기술비중 산정근거의 타당성 - 착수기본료 할인액 이상의 매출정률사용료 납부실현 가능성 - 과거 매출정률사용료 납부 실적	40	
상용화 추진계획 적정성	- 상용화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 인력, 자금, 설비투자 등 자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 타사와 차별화 되는 상용화 역량	30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옵션형 계약 승인)		

다. 옵션계약서(표준안)

기술이전을 위한 옵션계약서 (표준안)

○○대학/연구소(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갑」이 보유한 ○○기술을 「을」에게 이전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옵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기술을 「을」에게 이전하기에 앞서 「을」로 하여금 기술 이전의 조건이나 실시 범위,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갑」으로서는 「을」의 사업화 능력 및 기술료 등 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에서 “기술”이란 「갑」이 보유하고 있는 ○○○○○○ 기술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이전 대상 특허”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다음의 특허를 말한다.

구분	국가명	특허번호	출원일/등록일	발명의 명칭
1		○○ - ○○○○호	○○○○년 ○○월 ○○일	○○○○○○○○○
2				○○○○○○○○○
3				

설명	**※ 국가명** - 특허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등록된 국가별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명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기술이전 특허가 국내 및 해외 특허가 혼재하는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PCT 출원인 경우 “PCT”라고 표시 **※ 특허번호** - 출원 중인 특허는 출원번호를, 등록된 특허는 등록번호를 기재 **※ 발명의 명칭** - 해외 특허의 경우 해당 국가에 출원·등록된 발명의 명칭을 원문 그대로 기재 **※ 특허 발명 이외 지식재산권** - 옵션의 대상으로 특허 외에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을 추가하는 방법과 ②항 표에 별도 구분을 추가하고, 관련 항목을 기재하는 방법이 있음

선택1	기술이전 특허가 여러 건으로 본문에 모두 표시하기 부적합한 경우
	① 이 계약에서. “이전 특허”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를 말한다.

③ 이 계약에서 “이전 대상 노하우란” 「갑」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다음의 기술 정보 및 자료 등을 말한다.

구분	노하우의 명칭	노하우의 개요	제공되는 형태/방식
1	○○○○○○○○○	○○○○○○○○○	○○○○○○○○○
2			

설명	**※ 노하우의 특정** - 노하우를 특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모호하게 표시할 경우 계약의 범위 및 이행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노하우의 명칭** - 특허 발명의 명칭에 준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기재 **※ 노하우의 개요** - 특허 발명의 요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재 **※ 제공되는 형태와 방식** - 출력물이나 파일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출력물의 문서번호 또는 파일명을 기재 - 기술지도 등의 방식으로 노하우 보유자가 시연이나 교육, 설명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일시, 회수, 장소 등을 명시
선택1	기술이전 대상 노하우를 본문에서 모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이 계약에서. “이전 대상 노하우”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별지 목록 (2) 기재 노하우를 말한다.
선택2	옵션 계약 단계에서 노하우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항 삭제

④ “옵션 기간”이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년**간을 말한다. 단, 이 기간은 「을」이 제2조에 따라 옵션을 행사한 날 또는 「을」이 「갑」에게 이 계약에 근거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한 날에 종료한 것으로 한다.

설명	**※ 옵션기간** - 반드시 '년' 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선정 - "계약 체결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라고 정하는 것도 가능함 - 기술공급자의 입자에서는 옵션기간이 단기일수록, 기술수요자 입장에서는 옵션기간이 장기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옵션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이전 본 계약 조건의 결정 및 사업화 가능성, 수익 규모 등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조 (옵션의 부여) 「갑」은 옵션 기간 중 「을」에 대하여 본 계약서 첨부 **「○○○○에 관한 실시 허락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장치**를 제조, 판매, 사용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 한다.

설명	※ 옵션 기간 동안의 실시 - 옵션 계약은 기술이전을 위한 본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계약 당사자, 특히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옵션 기간 동안 이전 기술의 실시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시 허락 조건 - 옵션 계약은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의 사전 단계이므로, 모든 계약 조건을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기술이전의 주요 조건(기술이전의 유형: 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 실시 범위: 국내 또는 해외, 기술료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옵션 계약에 첨부
선택1	이전 대상 기술이 화학, 바이오 관련 기술인 경우
	제2조 (옵션의 부여) 「갑」은 옵션 기간 중 「을」에 대하여 본 계약서 첨부 **「○○○○에 관한 실시 허락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 물질의 사용 또는 ○○○○ 물질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건을 제조, 판매, 사용 그 밖에 처분에 관한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제4조 (제3자에 대한 옵션의 부여)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을」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갑」의 "기술"과 관련한 옵션 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설명	- 제3자에게도 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의 옵션 계약이거나, 사안에 따라 다수의 실시 예정자에게 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기술수요자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독점적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선택1	※ 독점적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옵션 기간 동안 「을」에게 일종의 우선권 내지 독점권을 허락하는 조항을 두게 됨 - 이로써, 「을」은 그 기간 동안 제3자 대비 유리한 지위에서 해당 기술의 실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됨
	「갑」은 옵션 기간 중 제3자에 대하여 「을」에 대한 옵션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보의 개시)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아래에 기재된 자료를 「을」에게 개시한다.

1. 특허 출원 제○○○○호 명세서
2. ○○○○제조 방법
3. ○○○○제조에 관한 실험 결과

설명	※ 개시 정보 - 공개·등록된 특허 정보 이외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특정 (예) ○○○○ 과제의 최종 보고서 (문서번호 00-0000) (예) ○○○○ 연구개발 노트 (관리번호 00-00000)
선택1	정보의 개시 외에 또는 개시의 방법으로 기술지원(방문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
	제8조(기술지원) ① 「갑」은 첨부 (3)과 같은 기술지원 계획에 따라 「을」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② 「갑」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은 기술지원을 위하여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을」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 또는 「을」의 임직원이 기술지원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상대방의 장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해당 임직원의 소속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선택2	보증면제 조항을 두는 경우 (기술보유자 입장에서는 기술정보의 제공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함)
	②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개시하는 “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서 그 유효성 및 실시 가능성, “기술”의 상용화 및 수익성, 기타 “기술”의 사업화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정보를 현재 상태 그대로 개시하며,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면책된다.

제6조 (대가)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기술 정보 및 옵션을 부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을」은 제4조에 따라 「갑」으로부터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금_____원(부가세 별도)을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대가는 반환이 불가하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전항의 대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설명	※ 대가 - 기술정보 및 옵션을 부여하는 대가는 기술이전에서 기술료를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음 - 대가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협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대가의 반환 - 여기에서 대가는 옵션 기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평가를 허락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련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 예외적으로 “갑”이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처음부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함), 옵션 기간 동안 제3자에게도 동일한 또는 더 유리한 옵션을 부여하는 등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나 중대한 계약 위반 또는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계약 관련 법리에 따라 대가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음
선택1	대가의 납부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정보의 개시도 계약 체결일에 동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기술 정보 및 옵션을 부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을」은 **<u>계약 체결일까지</u>** 「갑」에게 금_____원(부가세 별도)을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선택2	대가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정보의 개시도 분할 납부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음 - ‘비고’란에는 회차/단계별 조건을 기재할 수 있음. 예) “1차 물성 테스트 통과시” 등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함)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기술 정보 및 옵션을 부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을」은 **다음 표에 기재한 일정에 따라** 「갑」에게 합계 금_____원(부가세 별도)을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차	금액(부가세별도)	납부 기한	비고
1	0,000,000원	0000년 00월 00일	
2	0,000,000원	0000년 00월 00일	
3	0,000,000원		

제7조 (옵션의 행사) ① 「을」은 옵션 기간 중에 첨부 **「○○○○에 관한 실시 허락 조건」에 따라** 「갑」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을」이 옵션 기간 중에 「갑」의 "기술"을 이전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이 제공하거나 개시한 기술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을」이 옵션 기간 중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설명	※ 옵션의 행사 - 옵션의 행사 및 불행사에 따른 내용을 정함 - 옵션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옵션의 불행사로 간주
선택1	옵션 계약서에 첨부된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을」은 옵션 기간 중에 첨부 **「○○○○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갑」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갑」에게 기술이전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선택2	추가 특허 출원 등 조건부로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③ 「을」이 "대상 특허"외에 추가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은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 및 비용 부담에 관해 정하기로 한다.

제8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개시된 기술 자료를 본 계약에 따른 **"기술"의 타당성 검토** 목적만으로 사용하며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은 제6조 제2항의 경우 본 계약 종료 후 ○**년간** 효력을 갖는다.

②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개시된 기술 자료를 「갑」의 동의를 얻은 임원 및 종업원에만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다른 제3자에게 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갑」으로부터 개시되기 전에 공지된 것
2. 「갑」으로부터 개시되기 전에 「을」이 스스로 개발하거나 정당한 제3자로부터 「을」이 입수한 것
3. 「갑」으로부터 개시된 후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되는 것
4. 「갑」으로부터 개시된 후 「을」이 정당한 제3자로부터 「을」이 입수한 것

설명	※ 비밀유지 - **(제공방법)** 제공하는 문서 또는 파일에 '비밀'임을 표시하고, 제공한 '비밀'의 목록 및 수령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범위)** "기술의 타당성 검토"는 예시이며, '목적'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이용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함 - **(기간)** 비밀유지기간은 개시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계약기간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접근제한)** '비밀'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함 ※ 별도의 비밀유지계약 - 기술이전 협상 단계에서 이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이 조항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해야함 -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에 의하고, 옵션계약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함
선택1	다른 방식의 비밀유지 조항의 예
	① 「을」은 "기술"에 관한 정보를 본 계약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국회, 정부, 수사기관, 법원 등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시에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항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알려져 있는 사항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다른 일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사항 4.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허용 받은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이후에 다른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공연히 알려진 정보

	③ 본 조의 의무는 쌍방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는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유효하다.

제9조 (계약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의 파산, 지급불능, 해산, 합병 등의 경우에는 「을」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설명	※ 계약 해지와 해제 -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해제'와 구별됨 - 계약 해지는 일정 사유 발생시 별도 통보 없이 하는 해지(즉시 해지)와 일정 기간 시정 요구를 한 후에 해지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음
선택1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
	제15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연구원'과 「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최고하지 아니하고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폐업, 해산, 청산, 파산결정 등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조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술의 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5조에서 정한 대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을」이 기술의 유효성, 실시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5.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② 「을」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연구원'에게 기술자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5항은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 (통지) ① 본 계약에 근거한 각 통지는 다음 수신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며, 모든 통지는 발신일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

구분	갑	을
성명		
소속/직급		
이메일		
주소		

② 「갑」 또는 「을」은 전항의 수신인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면책된다.

설명	※ 통지 -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달주의(到達主義), 신속성을 요하는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상 예외 규정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의사 표시를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음 - 옵션 계약과 같이 긴밀한 의사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의사 표시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 기간 중 '수신인'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제11조 (양도)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에 관하여 「갑」의 사전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설명	※ 권리 양도 - 「을」의 계열사, 협력사 등도 제3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제1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종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옵션 기간 종료일 까지 유효하다.

설명	※ 계약기간 - "옵션 기간"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계약 기간은 옵션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개념임

선택1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종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하다.
선택2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서 추가
	단, 당사자간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 또는 「을」이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선택3	옵션 기간/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00조(옵션기간의 연장)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옵션 기간 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옵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을」은 기간 연장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금 _____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옵션 기간 연장 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옵션 기간 연장은 기술이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설명	※ 분쟁 해결 - 계약 관련 분쟁의 해결은 크게 일반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하는 방법과 중재 등의 절차에 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중재 절차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대표적이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제도 등이 있음 - 분쟁 해결 절차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선택1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하는 경우 (관할은 사안에 따라 변경 가능함/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선택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의하는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4조 (협의)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유효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학/연구소
주　　소 :
대　　표 :　　(인)

「을」 ○○주식회사
주　　소 :
대표이사 :　　(인)

【예시】 첨부 1. 이전 대상 특허

구분	국가명	특허번호	출원일/등록일	발명의 명칭
1		○○ - ○○○○호	○○○○년 ○○월 ○○일	○○○○○○○○○
2				
3				
4				
5				

※ 특허 이외에 다른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구분	번호	국가명	특허번호	출원일/등록일	발명의 명칭
특허	1		○○ - ○○○○호	0000.00.00	○○○○○○○○○
	2				
	3				
실용신안	1				
디자인	1				
저작물	1				

【예시】 첨부 2. 이전 대상 노하우

구분	노하우의 명칭	노하우의 개요	제공되는 형태/방식
1	○○○○○○○○○	○○○○○○○○○	○○○○○○○○○
2			
3			
4			

※ 노하우 기재의 다른 예

구분	노하우의 명칭	노하우에 대한 설명	제공되는 형태/방식
1	0000를 이용한 항체 제조 및 선별 기술	이 기술의 항체 라이브러리는 인간 **세포 DNA루벝 ***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증폭한 후, ***에 클로닝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항체를 제조·선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항체 라이브러리 (** CELL STOCK) - 운영 프로토콜 (문서 20페이지) - 시스템 상세 정보 (문서 파일 20MB)
2			
3			

【예시】 첨부 3. 기술지원 계획

구분		내용	비고
1	기술지원 기간	(무상)	
		(유상)	
2	기술지원 내용	(연구/실험 자료 관련)	
		(실시 방법 관련)	
		(기타)	
3	기술지원의 방법	(장소)	
		(회수 및 시간)	
		(방법)	
4	기술지원 비용	(유상)	
		(무상)	
5	기타 조건		

【예시】 첨부 4. 기술이전의 조건

구분		내용	비고
1	이전 기술	(기술의 명칭)	
		(대상 특허)	
		(기타)	
2	이전 유형	(양도, 실시허락-전용실시, 통상실시 등)	
		(실시 범위)	
		(실시 기간)	
		(기타 조건)	
3	기술료	(총액)	
		(지급방식) 정액(일시납/분납), 경상	
		(경상기술료인 경우) 산정 조건과 방식	
4	기술지원	(기술지도/지원 방법 및 일정)	
		(관련 비용 부담)	
5	기타 조건	(특허 비용 부담)	
		(추가 출원/해외 출원)	
		(명칭 사용)	
		(기타 사항)	

3. 경상기술료 표준 계약(안)

3.1 기술이전 계약서의 구성

기술이전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제, 전문, 본문, 후문, 서명으로 구성된다. 본문에 포함될 내용이 복잡하거나 표나 그림 등으로 본문에 삽입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할 수도 있다.

표 25. 기술이전 계약서의 구성

구분	내용
표제	▪ 기술이전 계약서의 제목
전문	▪ 당사자, 목적, 체결경위, 체결의사
본문	▪ 정의 ▪ 실시권 허락 ▪ 기술료 ▪ 개량기술 ▪ 보증 ▪ 일반조항
후문	▪ 말미 문언
서명	▪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별지	▪ 부록 ▪ 표, 그림 등 본문에 삽입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내용

1) 표제

표제는 계약서의 제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제목을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실시계약서’, ‘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기술제휴계약서’, ‘특허실시계약서’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약’ 대신에 ‘협약’, ‘협정’, ‘약정’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표제는 계약의 내용을 구속하지 아니하나[12],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격을 드러내는 제목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전문

전문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 체결경위, 체결의사 등이 기재되는 부분이다. 영문 계약의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으로 전문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나, 국문 계약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상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문의 작성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3) 본문

기술이전 계약서 본문은 계약 당사자가 기술이전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으로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계약서 본문은 정의 조항, 실시권 허락 조항, 기술료 조항, 개량기술 조항, 보증 조항, 일반조항 등으로 구성되고, 계약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제품 생산, 제품 구매 등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반조항은 모든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신의칙 조항, 불가항력 조항, 비밀유지조항,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 조항, 통지 조항, 계약양도 조항, 분쟁해결 조항, 완전합의 조항 등을 말한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12) 판례는 계약서의 제목과 무관하게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적 내용을 기초로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31672 판결 :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을이 건립한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대계약서에 을이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을의 그와 같은 의무는 토지의 사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차계약은 그 계약서상의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다1412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계약서의 문구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일반조항

일반조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종료와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나,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의에 의한 종료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내용대로 계약관계가 청산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상정할 수 있는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계약 종료 및 그 청산 과정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13)]

신의칙 조항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성실의무를 규정한 선언적 조항으로, 불가항력 조항과 통지 조항 및 완전합의 조항은 당사자 간의 성실의무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항까지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며, 반대로 비밀유지 조항은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지켜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계약양도 조항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 그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계약상 권리의무를 취득하게 할 수 없다.

분쟁해결 조항은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해결의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특히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중재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3)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 표준 계약(안)

아래에서는 기술의 제공자인 공공연구기관[14]이 소유하는 특허권 및 기술자료에 관한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기술도입자인 기업에게 이전하고, 기업은 기술이전의 대가로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 계약조건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 표준 모델을 설명하기로 한다.

1) 전문

한국ABC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XYZ(이하 '회사'라 한다)는 '연구원'이 보유한 『ㅇㅇㅇ에 관한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전문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 체결경위, 체결의사 등이 기재되는 부분이다. 전문의 내용에 따라서는 본문과 함께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또한 계약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본문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당사자를 기재할 때에는 법적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법적 명칭이 길거나 반복 사용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약칭을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 당사자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통용되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칭을 정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약칭을 계약서 전체에 통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순서 그대로 법인의 법적성격을 표시하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의 용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은 '(재)', '(사)', '(주)'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고, 개인기업의 상호를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이름 옆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공공연구기관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과 대학 등이 포함되는데, 아래에서는 편의상 출연연을 당사자로 하여 설명한다. 다만, 대학도 기술이전계약의 제공자인 측면에서는 출연연과 특별히 다르지 아니하다.

<예시문 : 기술도입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한국ABC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홍길동(상호 : XYZ, 이하 '회사'라 한다)는 '연구원'이 보유한 『ㅇㅇㅇ에 관한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2) 목적 조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연구원'이 '회사'에게 『ㅇㅇㅇ에 관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목적 조항을 둘 수 있다. 목적 조항을 둘 경우 계약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필수적인 조항은 아니다.

3) 정의 조항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술'이라 함은 『ㅇㅇㅇ에 관한 기술』로서 제2항의 '계약특허' 및 제3항의 '기술자료'를 말한다.

② '계약특허'라 함은 아래 표에 기재된 특허발명 및 이에 관한 특허권(출원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출원 중인 특허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국가

③ '기술자료'라 함은 계약특허에 관하여 '연구원'이 '회사'에 제공한 [별지1] 기술자료 목록에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 '실시'라 함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실시를 말한다.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제품을 말한다.
⑥ ‘매출액’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때 ‘매출액’에는 ‘회사’의 위탁에 따라 제3자가 계약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포함한다.
⑦ ‘생산개시’라 함은 ‘회사’가 1개 이상의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당 일을 “생산개시일”이라 한다.
⑧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확장 또는 대체하거나, 계약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하거나, 계약기술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을 말한다.
⑨ ‘재실시권’이라 함은 실시권자가 실시권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양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시권자가 계약제품의 생산만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실시권자가 생산한 계약제품을 제3자에게 위탁판매 하는 경우에는 재실시권의 설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⑩ ‘재실시권자’라 함은 재실시권의 설정에 의하여 계약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⑪ ‘우선협상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연구원’이 제3자에게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고자 할 경우, 제3자와의 협상 이전에 ‘회사’가 ‘연구원’과 사이에 계약기술이나 개랑기술 등의 양수,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하여 우선 협상할 권리
2. 제3자가 '연구원'으로부터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가 '연구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회사'가 우선하여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 등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수 있는 권리
⑫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조항은 계약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사용되거나, 당사자 간에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의 의미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향후 용어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계약서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반복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없거나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의 조항을 두지 않고 계약서 본문에 용어의 정의를 둘 수도 있다.

ㅇ 계약기술

‘계약기술’은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을 말한다.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노하우[15]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하우를 이전하는 경우에 노하우의 범위나 기술이전의 완료 여부 등에 대해서 기술도입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도입자의 이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노하우의 내용과 범위 및 이전방법을 명확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별지에 기재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노하우의 내용 전체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비밀유출위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노하우를 다른 기술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징, 구성요소, 노하우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및 노하우 이전방법 등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위 표준계약안은 위와 같은 노하우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하우를 대체하여 제공되는 ‘기술자료’를 계약기술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하우의 이전은 기술지원의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노하우의 이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예시문 1: 특허권만 이전하는 경우>

① ‘계약기술’이라 함은『ㅇㅇㅇ에 관한 기술』로서 아래 표의 특허권을 말한다.

특허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국가

15)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기술이전계약서는 계약기술에 노하우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문 2: 특허권과 노하우까지 이전하는 경우>

① '계약기술'이라 함은『ㅇㅇㅇ에 관한 기술』로서 제2항의 '계약특허' 및 이에 관한 노하우를 말한다. 노하우의 내용, 범위 및 이전방법은 (별지) 노하우 목록에 따른다.

ㅇ 계약특허

계약특허는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 및 이에 관한 특허권을 말한다. 특허발명 외에 고안, 디자인 기타 기술이 기술이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기재할 수 있다.

계약특허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계약서 별지에 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기술이전계약은 등록특허권 외에 출원 중인 특허발명도 가능하므로, 특허권에는 출원 중인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ㅇ 실시

'실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기술이전계약의 대상이 '특허발명'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법체계에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특허법[16]에서 정의하는 개념이 가장 명확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정부 R&D법령에서는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ㅇ 계약제품

계약제품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들로서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제품에는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계약기술이 방법특허로서 그 실시결과가 무형물이거나 그 외의 것이 되는 경우에는 '제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기술제공자로서는 계약기술을 실시하여 생산 또는 제조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계약제품의 용어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기술의 사용제품이 명확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제품 명칭이나 모델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특정할 수도 있다.

〈예시문 1 : 계약기술이 건설시공기술인 경우〉

⑤ '계약공사'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건물 기타 구조물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예시문 2 : 계약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인 경우〉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예시문 3 : 계약기술이 on/off-line 서비스에 관한 기술인 경우〉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사용한 on/off-line 서비스를 말한다.

〈예시문 4 : 계약제품을 구체적 개별제품으로 특정하는 경우〉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회사'가 생산한 ㅇㅇㅇ 제품(모델명 : xxxx)을 말한다.

ㅇ 매출액

매출액은 계약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서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고,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된다.

한편, 매출액에는 매출 발생을 위한 할인, 반품, 외상판매 등에 따른 매출액도 포함되므로,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포함할 것인지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당사자의 신뢰도에 따라서는 매출액에 대해서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된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을 토대로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매출액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확인 비용이 추가되어 기술도입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술도입기업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산정액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때에는 기술제공자가 직접 확인 및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기술도입자로부터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쌍방의 신뢰 유지, 신속성, 합리성에 부합한다 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계약제품에 대한 원재료 비용이 크거나, 여러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매출이익이나 경상이익 또는 순이익을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로 할 수도 있다.

〈예시문 1 : '순매출액'을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경우〉

⑥ '매출액'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때 '매출액'에는 '회사'의 위탁에 따라 제3자가 계약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포함하고,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다.

1. 통상의 거래 할인 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금액
2. 계약제품 하자로 인해 반환된 계약제품 가액(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제품에 관한 외상판매대금
4.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시문 2 : '매출이익'을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경우〉

⑥ '매출이익'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시문 3 : '순이익(영업이익)'을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경우〉

⑥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ㅇ 재실시권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기술을 직접 실시할 수도 있으나, 사업의 확장 또는 영업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재실시권에 관한 권한을 희망한다. 또한, 벤처나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기술과 함께 M&A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도입자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술제공자가 다른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재실시권 설정을 제한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공공특허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국민 일반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료로서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므로, 재실시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는 재실시권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부득이 제3자에게 계약제품의 생산만을 위탁하거나, 판매만을 위탁할 필요성이 많고, 이는 매출액의 증대로 이어져 기술제공자에게도 이익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재실시권의 예외로서 자기실시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ㅇ 우선협상권

공공특허의 기술제공자인 공공연구기관은 계약기술을 이전한 이후에도 동일 분야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가 발생한다. 기술도입자로서는 그와 같은 동일분야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술제공자로서는 동종분야의 기술에 대한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계약기술이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기술발전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기존 이전기술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술도입자가 후속기술의 이전에 대한 우선권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협상권에 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4) 실시권 허락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분야는 [_____]분야로 한정한다.
④ '연구원'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3항의 실시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연구원'과 추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⑥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은 사전에 '회사'에게 제3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실시권 조항은 기술이전계약서의 목적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특허권은 특허로서 등록된 국가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 기술이전계약에서 계약기술의 실시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출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포함시키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대한민국 외의 지역을 실시지역으로 할 수 있다.

기술제공자인 공공연구기관은 계약기술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자율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거나 특허권 양도계약인 경우에는 연구 자율성 보장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계약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있고 기술도입자가 전체 분야에서 계약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안과 같이 계약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여 실시권을 허락할 수도 있다. 만일 계약기술의 사용분야를 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안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 동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동일 기술을 이전할 수 없게 되나,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술료 수익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기술료 금액이나 기술료율이 더 높이고자 희망함은 당연하다.

만일 재실시권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삭제하고, 실시권 허락 조항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문 1 : 계약기술의 사용분야를 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은 사전에 ‘회사’에게 제3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시문 2 :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연구원’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예시문 3 : 재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은 ‘연구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재실시권의 설정

제4조(재실시권의 설정)
① '회사'는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권리의무를 '재실시권자'가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3자와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그 계약 내용(제3자와의 계약서 첨부)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재실시권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연구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⑤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으로 인하여 '연구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실시권의 설정 여부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제3조에 재실시권 설정 금지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 계약안은 재실시권을 허용하되,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나, 반대로 재실시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사후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때 재실시권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매출액으로 포함시키거나 그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시문 : 원칙적 재실시권 허용하는 경우〉

제4조(재실시권의 설정)
① '회사'는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권리의무를 '재실시권자'가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3자와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그 계약 내용(제3자와의 계약서 첨부)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재실시권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연구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⑤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으로 인하여 '연구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재실시권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기술료 기타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금을 매출액에 포함한다.(또는, ⑥ '회사'가 재실시권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기술료 기타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금의 [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원'에게 기술료로서 지급한다.)

6) 기술료의 지급

제5조(기술료의 지급)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계약기술의 실시권 허락에 대한 대가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계약기술의 실시를 포기(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회사'는 '연구원'에게 선급기술료로서 금___,_____,_____원을 아래 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	선급기술료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방법
20__. __. __.	___,_____,_____원	- 예금계좌 송금 - 예금계좌번호 :_____ - 예금주 : 한국ABC연구원)

③ '회사'는 '연구원'에게 경상기술료로서 매출액의 [__]%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이때 경상기술료 계산분기는 매년 1월 1일(최초 계산분기는 생산개시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년도 경상기술료는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선급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납부한 기술료는 계약특허의 거절결정·무효, 계약기술의 실시 불가능·상용화 실패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기술료에 관한 조항은 기술이전계약서의 핵심조항으로, 그 내용이나 해석에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용어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이전계약이 통상실시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술료 지급의 방식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상기술료는 다시 선급기술료와 매출정률기술료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계약안은 경상기술료 방식의 기술료 지급방식을 채택하였고,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매출정률 기술료' 대신 '경상기술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7)]

표준계약안은 경상기술료 산정기준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은 계약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 할 수 없는 할인, 반품, 외상판매 등에 따른 매출액도 포함되므로,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시문 : '순매출액'을 경상기술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⑥ '매출액'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때 '매출액'에는 '회사'의 위탁에 따라 제3자가 계약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포함하고,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다.

1. 통상의 거래 할인 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금액
2. 계약제품 하자로 인해 반환된 계약제품 가액(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제품에 관한 외상판매대금
4.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제5조(기술료의 지급)

③ '회사'는 '연구원'에게 경상기술료로서 순매출액의 [__]%에 해당하는 금액

17)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고, 타 부처의 기술료 규정도 대동소이하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5.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이때 경상기술료 계산분기는 매년 1월 1일(최초 계산분기는 생산개시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년도 경상기술료는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가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술료에 대해서, 판례는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04.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방지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바이오산업분야의 기술과 같이 기술의 실시 단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마일스톤 방식의 기술료 지급방식을 추가할 수도 있다.

<예시문 : 마일스톤 방식의 기술료 지급방식>

제5조(기술료)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기술”의 실시권 허락에 대한 대가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기술료 납부의무는 “기술”의 실시를 포기(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의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회사'는 '연구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고정기술료를 아래 표의 지급조건에 따라 '연구원'의 계좌(납부계좌 : , 예금주 :)를 통해 납부한다.

지급조건	기술료 (단위:백만원, 부가세 별도)	비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240	선급기술료
대한민국 특허 등록 시	90	
FTO(Freedom To Operate Analysis) 결과 이상 없는 경우	90	'연구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지정한 전문가의 조사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함
재현실험 완료시	180	[별지 1] 균주 목록 기재 균주의 재현 항목과 기준에 따름
임상 1상 진입시	100	
임상 2상 진입시	200	
임상 3상 진입시	400	
품목허가 제출시	400	
매출발생시	400	
누적 매출 500억원 달성시	400	
합계	2,500	

③ '회사'는 '연구원'에게 “매출액”의 1%(제2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실시분야에 대해서는 3%)에 상당한 금액(부가세 별도)을 경상기술료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산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당해년도 경상기술료는 다음년도 5월 1일까지 '연구원'의 계좌(납부계좌 : , 예금주 :)를 통해 납부한다.
④ '연구원'은 '회사'가 선급기술료를 납부할 때, 잔여 고정기술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납부한 기술료는 “특허”의 거절결정, 무효, 재현 실험 실패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제3자에게 “기술”을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실시

제품”의 판권을 허락하거나,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는 등 “기술”로 인하여 수익(“매출액”에 따른 수익은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분배비율에 따라 '연구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시기	분배비율(%)	
	'회사'	'연구원'
계약체결 이후 ~ 임상 1상 개시 전	50	50
임상 1상 개시 후 ~ 임상 2상 개시 전	60	40
임상 2상 개시 후 ~ 생산개시일 전	70	30
생산개시일 이후	80	20

다른 한편으로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액기술료나 선급기술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술료의 금액이 예상 가능하나, 매출정률방식의 경상기술료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술료 금액의 예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선급기술료를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 정하여 기술도입자의 기술도입 및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도입자가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매출액이 많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료를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술제공자인 공공연구기관의 입장으로서는 공공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여 “공공기술의 개발->이전->사업화->기술료->기술개발 재투자->재이전”의 공공기술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존립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술도입자가 이전받은 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공기술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도입자의 기술도입비용 절감과 기술제공자의 기술료 및 기술이전목적 달성 등 상호 간의 상반되는 입장을 고려하면, 기술도입자의 기술실시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최저기술료 조항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최저기술료 역시 경상기술료로서 기술의 실시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의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최저기술료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18)]

18) 다만, 최저기술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술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시문 : 최저기술료 조항을 두는 경우>

제5조(기술료의 지급)

⑤ 제3항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최저기술료는 ___,___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경상기술료가 최저기술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약기술의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최저기술료를 해당연도의 경상기술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7) 경상기술료 계산방식

제6조 (경상기술료의 계산 등)

① '회사'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계약제품의 판매가격, 수량, 유형, 매출액 등 경상기술료 산정내역 등이 기재된 보고서(이하 "경상기술료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회사'가 제출한 경상기술료 보고서 기재 내용이 부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매출액 명세서 기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년 계약기술의 실시에 관련된 자료(이하 '실시자료'라 한다), 계약제품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서류(계약제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매출액 명세서 등을 포함하며, 이하 '매출자료'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④ '연구원'은 '회사'가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제출한 경상기술료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사'의 통상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실시자료, 매출자료, 경상기술료 보고서, 제무제표 등 관계서류를 검사(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제4항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상기술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외의 사항으로 '회사'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것을 '연구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이나 검사를 거쳐 해당 연도의 경상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⑦ '연구원'은 경상기술료 보고서에 기재된 경상기술료와 제6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경상기술료가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연구원'의 차액 또는 경상기술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연구원'은 경상기술료 보고서에 기재된 경상기술료와 제6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경상기술료가 [5]% 이상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경상기술료 확인 또는 검사에 소요된 비용(공인회계사 비용을 포함한다)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원'에게 재산정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상기술료 방식은 매출정률 기술료를 전제로 하므로, 매출액의 계산은 기술제공자나 기술도입자 쌍방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매출액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신뢰를 기초로, 기술도입자의 자율에 의한 경상기술료 산정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도입자의 경상기술료 산정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기술제공자의 확인이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다만, 기술제공자의 의심이 검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 비용은 기술도입자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예시문 : 최저기술료 조항을 둔 경우>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회사'에게 해당 연도의 경상기술료로 제5조 제5항의 최저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이나 검사를 거쳐 산정한 해당 연도의 경상기술료가 최저기술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8) 기술자료 제공 및 실시의무

제7조(기술자료 제공 및 실시의무)

① '연구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일 이내에 '회사'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회사'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연구원'에게 그 제공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 동안 '연구원'의 고의나 과실없이 그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연구원'은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개월 이내에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실시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가 1개월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계약기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회사'는 계약기술의 제외 등을 이유로 기술료의 반환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나머지 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개월 이내에 계약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과 '회사'는 사전 서면합의로 생산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원)

① '연구원'은 [별지2] 기술지원 계획서에 따라 '회사'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② '연구원'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연구원'은 기술지원을 위하여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연구원'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기술지원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상대방의 장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해당 임직원의 소속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기술이전계약은 기술제공자의 기술을 기술도입자가 이전받아 실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만일 기술도입자가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기술도입자에게는 기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경상기술료 방식의 기술이전계약에서 기술도입자가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을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기술도입자의 기술실시의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일 기술도입자가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계약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함께 두어 실질적으로 기술도입자의 기술실시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도입자가 특허권만으로는 기술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술제공자의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기술실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도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지도는 정규 연구업무 외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지도 내용, 방식 및 비용 부담자도 별지 형태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9) 특허유지비용 등

제9조 (특허비용 등)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한다. 이때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OA 비용 포함)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하 '특허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한다.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특허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연구원'이 사전에 합리적 이유와 함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PCT출원 등 해외 출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OA 비용 포함)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기술에 관하여 '연구원'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제반 대응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연구원'은 그 대응이 불필요하거나 대응비용이 지급받은 기술료 수입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3자와의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할 수 있다.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하여 특허유지비용은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유지비용을 예산화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기술도입자와의 협의로 기술도입자가 이를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원의 경우 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공공연구기관의 입장에서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스스로의 부담으로 출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특허유지비용을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가 반분하거나, 기술제공자가 원칙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특허권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특허유지비용의 지출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의무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한편, 실시권자인 '회사'의 입장에서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나, 그 비용은 그 설정등록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특허에 대한 분쟁대응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대응비용이 막대할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이를 부담할 수 없고 분쟁대응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예시문 : 회사가 특허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9조 (특허비용 등)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한다. 이때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OA 비용 포함)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하 '특허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한다. 만일, '연구원'이 계약기간 동안 특허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PCT출원 등 해외 출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OA 비용 포함)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술에 관하여 '연구원'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제반 대응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연구원'은 '회사'가 그 대응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자와의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할 수 있다.

10) 개량기술의 개발

제10조(지식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① '연구원'이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연구원'은 '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여부 및 실시조건에 대해서 '회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임원 및 피용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개량기술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단독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는 개량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그 개량기술 및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무상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기술이전계약 체결 이후 ‘연구원’의 개량기술 개발은 동일 분야에 관한 연구업무의 연속선 상에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나 실시는 기술이전계약과 별개로 취급함이 합리적이다. ‘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의 기술이전이 없었던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개발 자체가 시도될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라 할 것이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연구원’으로서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전받은 기술이 기존 사업분야에 해당하고 개량기술도 종전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의 비용과 부담으로 단독 개발한 것이라면, ‘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량기술까지 ‘연구원’의 지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연구원’의 무상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의 범위에 속한다. 표준계약안은 이러한 근거에서 작성되었다.

〈예시문 : 개량기술의 공동소유〉

제10조(지식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① '연구원'이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연구원'은 '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여부 및 실시조건에 대해서 '회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임원 및 피용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개량기술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회사'의 공유로 하며,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서류제출, 절차 등은 ‘연구원’과 ‘회사’가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특허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11) 우선협상권

제11조(우선협상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1. 제2조 제2항의 실시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관한 실시권
2.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의 양도
3. 개량기술에 관한 실시권

② '회사' 또는 '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상 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우선협상권은 제2항에 따른 협상 개시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존속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는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우선협상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회사'가 제시한 협상조건에 대해서 신의성실로써 협상하여야 한다.

위 정의 조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가 '연구원'의 개발기술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필요로 할 경우에 둘 수 있는 조항이다.

12) 신의칙

제12조(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연구원'과 '회사'는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의성실로써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 기간 동안 매년 1회 '회사'에게 기술실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계약기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술의 실시에 필요한 연구소 보유 시설과 인력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연구원'과 '회사'는 대표자, 주소, 인수합병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면책된다.

신의칙 조항은 계약의 성실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조항이다. 또한 신의칙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나 쌍방간의 협력의무를 규정할 수 있고, 통지의무를 함께 규정할 수도 있다.

13) 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회사'와 '연구원'은 계약기술에 관한 정보를 본 계약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국회, 정부, 수사기관,

법원 등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시에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항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시에 이미 '연구원' 및 '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알려져 있는 사항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다른 일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사항
4.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허용 받은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이후에 다른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공연히 알려진 정보
③ 본 조의 의무는 쌍방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는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유효하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대한 보장을 규정한다.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는 이를 계약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불가항력

제14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다.

15) 보증면제

제15조(보증면제)
① '연구원'은 계약기술의 유효성 및 실시가능성과 계약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상용화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 및 판매에 대해 보증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 지불을 포함하는 '회사'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구원'과 '회사'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공공특허를 연구개발하고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상용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술의 실제 실시나 비정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특허권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의하여 무효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고, 이 경우 많은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연구기관으로서는 그 설립목적이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의 유효성이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음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특허의 기술이전계약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보증 면제조항은 부득이하고 또한 필수적인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계약기술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수입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와 같이 보증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영업손실까지 책임을 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시문 : '연구원'이 기술료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술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

제15조(보증)

① '연구원'은 계약기술의 유효성 및 실시가능성에 대해 보증하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 지불을 포함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수입액을 초과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구원'과 '회사'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16)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제1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연구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최고하지 아니하고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폐업, 해산, 청산, 파산결정 등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조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술의 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사'가 계약기술의 유효성, 실시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5. 기타 '연구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②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계약기술에 의한 제품의 생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회사'의 부담으로 계약특허에 관한 실시권 설정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가 실시권 설정등록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위약벌로 금1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연구원'에게 기술자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은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연구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은 기술이전계약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위한 조항이다. 실제 분쟁과정에서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이전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계약기술의 실시를 중단하고 관련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실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시권을 말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회사’의 자발적인 실시권 설정등록 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반에 따른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초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연구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할 경우 ‘회사’의 영업손실 등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지급받은 기술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계약기간

제1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__. __. __.부터 20__. __. __.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계약기간을 기재할 때는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일자로 명확히 기재함이 바람직하나, 계약의 체결 절차가 예측할 수 없거나 단계적으로 이루어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으로' 정할 수 있고, 자동갱신조항도 함께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

<예시문 :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1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18) 일반조항

제19조(명칭사용)
'회사'는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광고선전, 판매촉진, 쟁송 등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지득한 정보 및 '연구원'이 '회사'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회사'의 홈페이지나 '회사'가 작성한 문서, 계약제품의 포장 기타 홍보자료에 '연구원' 또는 그 소속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권리양도의 제한)

'연구원'과 '회사'는 상호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연구원'과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특허의 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무효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은 '연구원'과 '회사'의 기술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전에 '연구원'과 '회사' 사이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된 다른 협의나 합의 또는 계약은 본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있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22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2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19) 계약 후문과 서명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또는 기명날인)하고, '연구원'과 '회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_____
한국00연구원
대표자 원장 (인)

'회사' 서울 중구 _____
주식회사 XYZ
대표이사 (인)

계약서는 각 당사자의 대표자(기업인 경우 대표이사, 기관의 경우 원장, 산학협력단의 경우 단장 등)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상 계약 체결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는 “위 대표자 000을 대리하여”라고 기재한다.

3.3 경상기술료 중심 표준 기술이전계약 양식

기술이전계약서

한국ABC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XYZ(이하 '회사'라 한다)는 '연구원'이 보유한 『ㅇㅇㅇ에 관한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연구원'이 '회사'에게 『ㅇㅇㅇ에 관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예시문 : 기술도입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
> 한국ABC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홍길동(상호 : XYZ, 이하 '회사'라 한다)는 '연구원'이 보유한『ㅇㅇㅇ에 관한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술'이라 함은 『ㅇㅇㅇ에 관한 기술』로서 제2항의 '계약특허' 및 제3항의 '기술자료'를 말한다.

> 〈예시문 1: 특허권만 이전하는 경우〉
>
> ① '계약기술'이라 함은『ㅇㅇㅇ에 관한 기술』로서 아래 표의 특허권을 말한다.

특허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국가

> 〈예시문 2: 특허권과 노하우까지 이전하는 경우〉
>
> ① '계약기술'이라 함은『ㅇㅇㅇ에 관한 기술』로서 제2항의 '계약특허' 및 이에 관한 노하우를 말한다. 노하우의 내용, 범위 및 이전방법은 (별지) 노하우 목록에 따른다.

② ‘계약특허’라 함은 아래 표에 기재된 특허발명 및 이에 관한 특허권(출원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출원 중인 특허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국가

③ ‘기술자료’라 함은 계약특허에 관하여 ‘연구원’이 ‘회사’에 제공한 [별지1] 기술자료 목록에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 ‘실시’라 함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실시를 말한다.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제품을 말한다.

〈예시문 1 : 계약기술이 건설시공기술인 경우〉

⑤ ‘계약공사’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건물 기타 구조물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예시문 2 : 계약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인 경우〉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예시문 3 : 계약기술이 on/off-line 서비스에 관한 기술인 경우〉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사용한 on/off-line 서비스를 말한다.

〈예시문 4 : 계약제품을 구체적 개별제품으로 특정하는 경우〉

⑤ ‘계약제품’이라 함은 ‘회사’가 생산한 ㅇㅇㅇ 제품(모델명 : xxxx)을 말한다.

⑥ ‘매출액’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때 ‘매출액’에는 ‘회사’의 위탁에 따라 제3자가 계약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포함한다.

〈예시문 1 : '순매출액'을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경우〉

⑥ '매출액'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때 '매출액'에는 '회사'의 위탁에 따라 제3자가 계약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포함하고,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다.

1. 통상의 거래 할인 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금액
2. 계약제품 하자로 인해 반환된 계약제품 가액(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제품에 관한 외상판매대금
4.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시문 2 : '매출이익'을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경우〉

⑥ '매출이익'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시문 3 : '순이익(영업이익)'을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경우〉

⑥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⑦ '생산개시'라 함은 '회사'가 1개 이상의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당 일을 "생산개시일"이라 한다.

⑧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확장 또는 대체하거나, 계약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하거나, 계약기술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을 말한다.

⑨ '재실시권'이라 함은 실시권자가 실시권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양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시권자가 계약제품의 생산만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실시권자가 생산한 계약제품을 제3자에게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실시권의 설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⑩ '재실시권자'라 함은 재실시권의 설정에 의하여 계약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⑪ '우선협상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연구원'이 제3자에게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고자 할 경우, 제3자와의 협상 이전에 '회사'가 '연구원'과 사이에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 등의 양수,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하여 우선 협상할 권리

2. 제3자가 '연구원'으로부터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가 '연구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회사'가 우선하여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 등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수 있는 권리

⑫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분야는 [_____]분야로 한정한다.

④ '연구원'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3항의 실시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연구원'과 추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⑥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은 사전에 '회사'에게 제3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시문 1 : 계약기술의 사용분야를 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은 사전에 '회사'에게 제3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시문 2 :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및 제4조에 따른 “재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연구원’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예시문 3 : 재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제3조(실시권의 범위)
① '연구원'은 '회사'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회사'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술 및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은 ‘연구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재실시권의 설정)

① '회사'는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권리의무를 ‘재실시권자’가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3자와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그 계약 내용(제3자와의 계약서 첨부)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재실시권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연구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⑤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으로 인하여 '연구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시문 : 원칙적 재실시권 허용하는 경우>

제4조(재실시권의 설정)
① '회사'는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권리의무를 '재실시권자'가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3자와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그 계약 내용(제3자와의 계약서 첨부)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재실시권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연구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⑤ '회사'는 '재실시권' 설정으로 인하여 '연구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재실시권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기술료 기타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금을 매출액에 포함한다.(또는, ⑥ '회사'가 재실시권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기술료 기타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금의 [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원'에게 기술료로서 지급한다.)

제5조(기술료의 지급)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계약기술의 실시권 허락에 대한 대가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계약기술의 실시를 포기(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회사'는 '연구원'에게 선급기술료로서 금___,____,____원을 아래 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	선급기술료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방법
20__. __. __.	___,____,____원	- 예금계좌 송금 - 예금계좌번호 :_____ - 예금주 : 한국ABC연구원)

③ '회사'는 '연구원'에게 경상기술료로서 매출액의 [__]%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이때 경상기술료 계산분기는 매년 1월 1일(최초 계산분기는 생산개시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년도 경상기술료는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선급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납부한 기술료는 계약특허의 거절결정·무효, 계약기술의 실시 불가능·상용화 실패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예시문 : '순매출액'을 경상기술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⑥ '매출액'이라 함은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때 '매출액'에는 '회사'의 위탁에 따라 제3자가 계약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포함하고,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다.
1. 통상의 거래 할인 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금액
2. 계약제품 하자로 인해 반환된 계약제품 가액(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제품에 관한 외상판매대금
4.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제5조(기술료의 지급)
③ '회사'는 '연구원'에게 경상기술료로서 순매출액의 [__]%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이때 경상기술료 계산분기는 매년 1월 1일(최초 계산분기는 생산개시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년도 경상기술료는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문 : 마일스톤 방식의 기술료 지급방식>

제5조(기술료)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기술"의 실시권 허락에 대한 대가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기술료 납부의무는 "기술"의 실시를 포기(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의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회사'는 '연구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고정기술료를 아래 표의 지급조건에 따라 '연구원'의 계좌(납부계좌 : , 예금주 :)를 통해 납부한다.

지급조건	기술료 (단위:백만원, 부가세 별도)	비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240	선급기술료
대한민국 특허 등록 시	90	
FTO(Freedom To Operate Analysis) 결과 이상 없는 경우	90	'연구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지정한 전문가의 조사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함
재현실험 완료시	180	[별지 1] 균주 목록 기재 균주의 재현 항목과 기준에 따름
임상 1상 진입시	100	
임상 2상 진입시	200	
임상 3상 진입시	400	
품목허가 제출시	400	
매출발생시	400	
누적 매출 500억원 달성시	400	
합계	2,500	

③ '회사'는 '연구원'에게 “매출액”의 1%(제2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실시분야에 대해서는 3%)에 상당한 금액(부가세 별도)을 경상기술료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산 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당해년도 경상기술료는 다음년도 5월 1일까지 '연구원'의 계좌(납부계좌 : , 예금주 :)를 통해 납부한다.

④ '연구원'은 '회사'가 선급기술료를 납부할 때, 잔여 고정기술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납부한 기술료는 “특허”의 거절결정, 무효, 재현 실험 실패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제3자에게 “기술”을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실시제품”의 판권을 허락하거나,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는 등 “기술”로 인하여 수익(“매출액”에 따른 수익은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분배비율에 따라 '연구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시기	분배비율(%)	
	'회사'	'연구원'
계약체결 이후 ~ 임상 1상 개시 전	50	50
임상 1상 개시 후 ~ 임상 2상 개시 전	60	40
임상 2상 개시 후 ~ 생산개시일 전	70	30
생산개시일 이후	80	20

제6조 (경상기술료의 계산 등)

① '회사'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계약제품의 판매가격, 수량, 유형, 매출액 등 경상기술료 산정내역 등이 기재된 보고서(이하 “경상기술료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회사'가 제출한 경상기술료 보고서 기재 내용이 부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매출액 명세서 기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년 계약기술의 실시에 관련된 자료(이하 ‘실시자료’라 한다), 계약제품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서류(계약제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매출액 명세서 등을 포함하며, 이하 ‘매출자료’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④ '연구원'은 '회사'가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제출한 경상기술료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 연구원'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사’의 통상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실시자료, 매출자료, 경상기술료 보고서, 제무제표 등 관계서류를 검사(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제4항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상기술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외의 사항으로 '회사'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것을 ‘연구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이나 검사를 거쳐 해당 연도의 경상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⑦ ‘연구원’은 경상기술료 보고서에 기재된 경상기술료와 제6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경상기술료가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연구원’의 차액 또는 경상기술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연구원’은 경상기술료 보고서에 기재된 경상기술료와 제6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경상기술료가 [5]% 이상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경상기술료 확인 또는 검사에 소요된 비용(공인회계사 비용을 포함한다)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원’에게 재산정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시문 : 최저기술료 조항을 둔 경우>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회사’에게 해당 연도의 경상기술료로 제5조 제5항의 최저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이나 검사를 거쳐 산정한 해당 연도의 경상기술료가 최저기술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기술자료 제공 및 실시의무)

① '연구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일 이내에 '회사'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회사'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연구원'에게 그 제공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 동안 '연구원'의 고의나 과실없이 그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연구원'은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개월 이내에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실시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가 1개월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계약기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회사’는 계약기술의 제외 등을 이유로 기술료의 반환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나머지 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개월 이내에 계약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과 ‘회사’는 사전 서면합의로 생산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원)

① ‘연구원’은 [별지2] 기술지원 계획서에 따라 ‘회사’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② ‘연구원’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연구원’은 기술지원을 위하여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연구원’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기술지원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상대방의 장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해당 임직원의 소속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특허비용 등)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한다. 이때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OA 비용 포함)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하 '특허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한다.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특허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연구원'이 사전에 합리적 이유와 함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PCT출원 등 해외 출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OA 비용 포함)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기술에 관하여 '연구원'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제반 대응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연구원'은 그 대응이 불필요하거나 대응비용이 지급받은 기술료 수입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3자와의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할 수 있다.

〈예시문 : 회사가 특허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9조 (특허비용 등)

① '회사'는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한다. 이때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OA 비용 포함)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하 '특허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한다. 만일, '연구원'이 계약기간 동안 특허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연구원'에게 계약특허에 관한 PCT출원 등 해외 출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OA 비용 포함)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술에 관하여 '연구원'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제반 대응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연구원'은 '회사'가 그 대응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자와의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① '연구원'이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연구원'은 '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여부 및 실시조건에 대해서 '회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임원 및 피용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개량기술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단독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는 개량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그 개량기술 및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무상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예시문 : 개량기술의 공동소유>

제10조(지식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① '연구원'이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연구원'은 '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여부 및 실시조건에 대해서 '회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임원 및 피용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개량기술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회사'의 공유로 하며,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서류제출, 절차 등은 '연구원'과 '회사'가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특허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우선협상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1. 제2조 제2항의 실시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관한 실시권
2. 계약기술이나 개량기술의 양도
3. 개량기술에 관한 실시권

② '회사' 또는 '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상 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우선협상권은 제2항에 따른 협상 개시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존속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는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우선협상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회사'가 제시한 협상조건에 대해서 신의성실로써 협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연구원'과 '회사'는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의성실로써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 기간 동안 매년 1회 '회사'에게 기술실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계약기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술의 실시에 필요한 '연구원' 보유 시설과 인력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연구원'과 '회사'는 대표자, 주소, 인수합병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면책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회사'와 '연구원'은 계약기술에 관한 정보를 본 계약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국회, 정부, 수사기관, 법원 등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시에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항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시에 이미 '연구원' 및 '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알려져 있는 사항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다른 일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사항
4.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허용 받은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이후에 다른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공연히 알려진 정보

③ 본 조의 의무는 쌍방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는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유효하다.

제14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보증면제)

① '연구원'은 계약기술의 유효성 및 실시가능성과 계약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상용화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 및 판매에 대해 보증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 지불을 포함하는 '회사'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구원'과 '회사'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예시문 : '연구원'이 기술료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술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

제15조(보증)

① '연구원'은 계약기술의 유효성 및 실시가능성에 대해 보증하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 지불을 포함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수입액을 초과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구원'과 '회사'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연구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최고하지 아니하고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폐업, 해산, 청산, 파산결정 등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조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술의 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사'가 계약기술의 유효성, 실시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5. 기타 '연구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②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계약기술에 의한 제품의 생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회사'의 부담으로 계약특허에 관한 실시권 설정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가 실시권 설정등록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위약벌로 금1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연구원'에게 기술자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은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연구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__. __. __.부터 20__. __. __.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예시문 :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1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제19조(명칭사용)

'회사'는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선전, 판매촉진, 쟁송 등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지득한 정보 및 '연구원'이 '회사'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회사'의 홈페이지나 '회사'가 작성한 문서, 계약제품의 포장 기타 홍보자료에 '연구원' 또는 그 소속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권리양도의 제한)

'연구원'과 '회사'는 상호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연구원'과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특허의 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무효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은 '연구원'과 '회사'의 기술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전에 '연구원'과 '회사' 사이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된 다른 협의나 합의 또는 계약은 본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있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22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2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또는 기명날인)하고, '연구원'과 '회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_____
한국00연구원
대표자 원장 (인)

'회사' 서울 중구 _____
주식회사 XYZ
대표이사 (인)

[별지1] 기술자료 목록

'연구원'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술의 명칭 :

2. 계약특허 :

3. 기술자료

구분	수량	설명/비고
가. 연구 및 실험 자료(설계 및 성능 시험 데이터)	*1 set*	
나. 계약제품 생산방법	*1 set*	
다. 시제품	*[1] set*	
라.		
마.		

4. 계약기술의 제공방법

*(구체적 제공방법을 기재)*_____

5. 기타

-끝-

[별지2] 기술지원 계획서

‘연구원’은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1. 기술지원의 목적[또는 목표] :

2. 기술지원 기간 :

3. 기술지원 인력 :

4. 기술지원의 구체적 내용

구분	방법	일시
가. 연구 및 실험 자료의 활용 지도		
나. 계약 제품 생산 방법 지도		
다.		

5. 기술지원 방법

[기술지원 장소(출장 기술지원, 연구원 방문), 이메일, 대면 자문 등 기술지원 일정, 방법과 횟수, 기술지원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기술지원 비용과 부담

[기술지원에 따른 인건비, 장비·시설사용료 기타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7. 기타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끝–

3.4 경상기술료 징수 및 관련 서식

경상기술료의 징수를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계약에서 분명히 정하는 것 외에도 계약 이후 정기적으로 기술의 실시 및 사업화 여부와 관련 매출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6. 경상기술료 징수 절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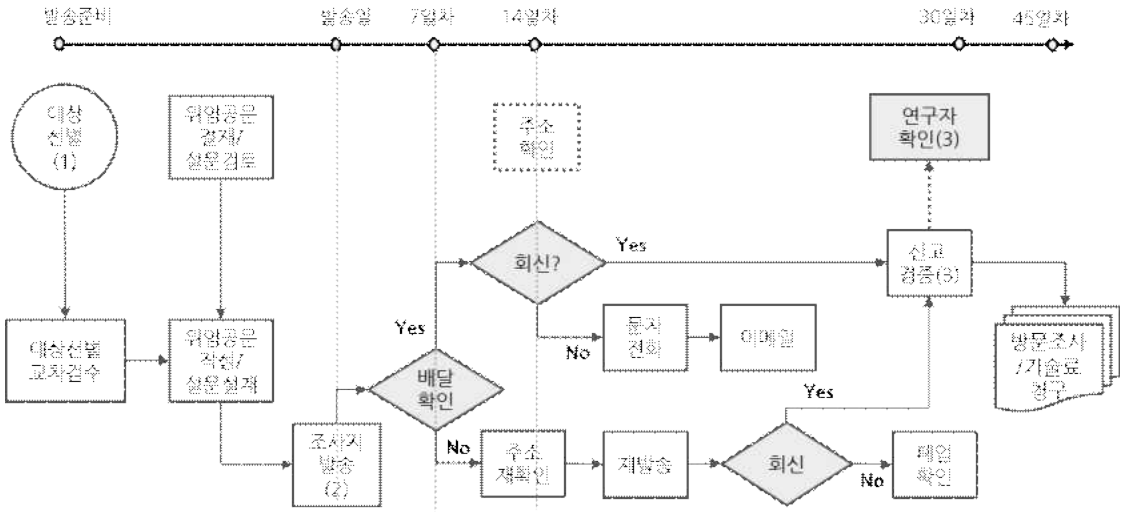

다만, 기업의 매출 자료는 일부 외감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이 자발적인 협조 없이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실시 기업의 회계 관리 수준(시스템 운영 여부, 외감 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 납부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어떤 제품의 매출에 대하여 경상기술료를 징수할 것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품목별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회계 결산 완료 후 매년 4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매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으나, 관련 시장 동향이나 실시 기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실시자의 고의적인 매출 축소 또는 누락이 반복되거나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기술료 감사 비용의 부담 내지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한 매출 조사서

<table>
<tr><td rowspan="4">계약
당사자
정보</td><td>명칭/성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담당자
연락처</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소속)</td></tr>
<tr><td colspan="2">(전화)</td><td colspan="2">(이메일)</td></tr>
<tr><td rowspan="4">계약
정보</td><td>이전기술의 명칭</td><td colspan="4"></td></tr>
<tr><td>계약 체결일</td><td colspan="4"></td></tr>
<tr><td>경상기술료 조건</td><td colspan="4">_____의 ___%</td></tr>
<tr><td>기타 조건
(최저기술료 등)</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매출
발생
여부</td><td>매출 발생 여부</td><td colspan="4">□ 매출 발생 □ 매출 미발생</td></tr>
<tr><td>매출 미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7">매출
발생
내역
※ 별지
이용 가능</td><td>매출 일자</td><td colspan="2">제품/상품/용역명</td><td>매출액(천원)</td><td>비고</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합계)</td><td></td></tr>
</table>

20 년 월 일

기술이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상기술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당사자(대표) : _____ (인)

○○○○○○○ **귀중**

붙임 : 매출 명세서 또는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등)

[붙임] 경상기술료 관련 세부 항목 명세서

(회계년도 :)

구분	품목/용역명	총매출액 (A)	매출에누리 및 환입,매출할인액 (B)	이전 기술의 기여율 (C)	순매출액 (D=(A-B)*C)	기술료 (F=D*요율)
계						

※ 기술이전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 계약별로 작성

※ ‘구분’에는 이전 기술을 실시한 제품/상품/용역별로 구분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인 | 특허청장 박원주

발행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www.kipo.go.kr)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 481-5437
FAX (042) 472-1406

이용허락 유형	표시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425 | http://www.kipo.go.kr

ISBN : 979-11-89854-75-1 13500
DOI : 10.8080/P9791189854751